

2018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공연장 및 공연)

2018년 증보판



PART 1

소규모 공연장

(객석 수 500석 미만)

제1장 재해예방조치 _8

제2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요령 _11

제3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예시 _24

PART 2

중·대규모 공연장

(객석 수 500석 이상)

제1장 재해예방조치 _38

제2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요령 _41

제3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예시 _57

PART 3

공연장 외의 장소나 시설에서의 공연

제1장 재해예방조치 _78

제2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요령 _82

제3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예시 _98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관련 규정

- ▶ 공연장 등록 시 해당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해야 하며, 등록된 공연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 신고 된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제2항]
-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공연 활동 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해대처계획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공연법 시행령 별표 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호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호	3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1

PART

소규모 공연장

- 객석 수 500석 미만 •

• 참고사항 •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는 소규모 공연장과 중·대규모 공연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내용은 객석 수가 500석 미만인 소규모 공연장에 해당합니다.

본 기술자료 중 소규모 공연장 부분은 공연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한 영세 소극장이나 전담 관리 인력이 부족한 소 공연장에서의 재해대처계획 작성 시, 계획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만약 5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이지만 해당 공연장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이 충분할 경우, 중·대규모 공연장에서의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1장 재해 예방조치

1. 개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공연장은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500석 미만은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의무가 아니므로 재해대처계획에 상기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안전교육 중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므로 재해대처계획서에는 공연자 안전 교육 실시 계획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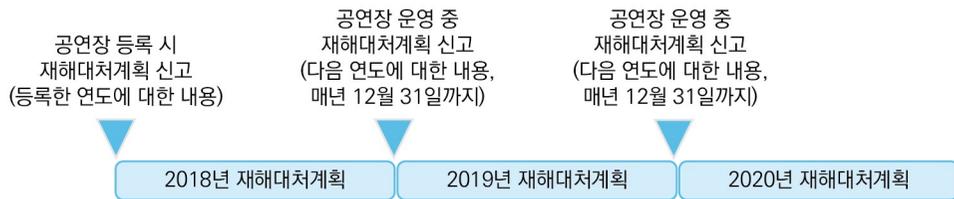
※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500석 미만 소규모 공연장)

- 1) 재해대처계획서
 -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2)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2. 신고 방법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해 예방조치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연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을 접수받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처리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월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재해대처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이미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연장은 개별 공연장별(등록된 공연장만 해당)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연장 등록 정보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

3. 처리 절차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확인/결재/수리를 통해 행정 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해당 문서를 접수받고 내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관할 처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보안을 신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대처계획 신고자는 이러한 요구 절차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공연장운영자등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공연장 혹은 공연현장 운영 현황에 맞춰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해야 하며, 재해대처계획 신고 사항에 포함해야 할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이 뚜렷해야 한다.

[그림 1-1]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제2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요령

1. 재해대처계획 신고

1) 신고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되, ①공연장운영자작성사항, ③운영자, ④공연장을 공연장 등록 정보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와 함께 신고한다.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공연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4)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공연자 안전교육)

[] 공연장 [] 신고
 [] 공연 [] 재해대처계획 [] 변경신고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① 100㎡이하 영자 작성 사항	③ 대표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④ 시설	명칭	종류 및 운영 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업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	개관일		
		시설 설치 내역 (※ 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무대기계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	.

2) 변경 신고

12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⑦ 변경 사항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서 첨부자료 중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⑦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 재해대처계획서 첨부자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하여 신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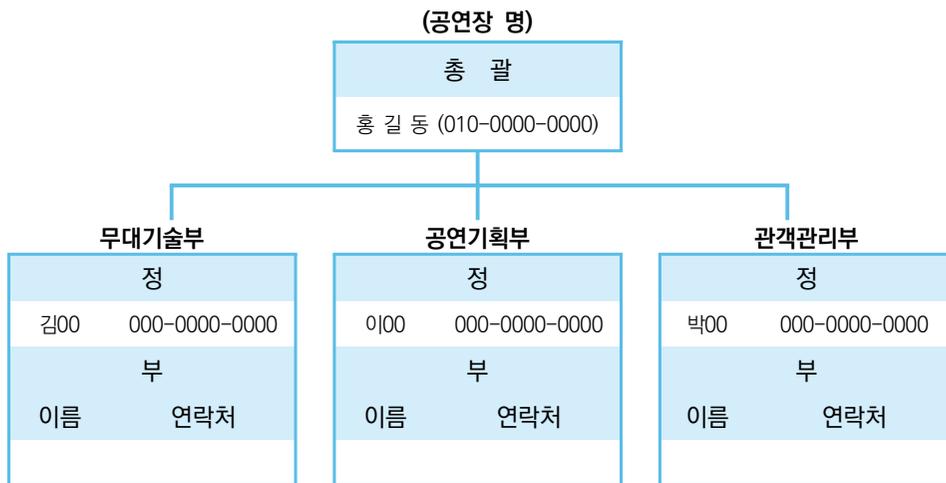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가) 관리 조직도

조직도란 조직 내의 지휘, 명령 등의 계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표를 말한다. 작성할 때는 기능별 업무를 구조화한 표 형식을 권장한다. 조직도 작성 시에는 각 조직의 기능별 업무와 연락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한다.

내부 직원과 더불어 위탁 및 외주 단체의 임무가 있을 경우 관리 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관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공연장에서는 공연장 이용 단체에 대한 공연장 관리 부분을 일부 위임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단,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에서의 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계획 수립 과 실천에 대한 주체는 공연장운영자이므로, 현실적 안전 관리 방안을 착안하여 위탁 관리를 결정함을 권장한다.

참고 관리조직도 예시(1) - 내부 관리 조직이 뚜렷한 공연장



참고 관리 조직도 예시(2) - 대관 위주의 운영을 하는 공연장으로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경우



※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단체가 공연 기간 중 공연장 관리에 대한 업무 일부(무대시설관리, 관객관리 등)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양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권장한다.

나) 담당자의 역할 및 임무 지정

공연장 총괄은 각 조직간 소통과 현장 통솔을 주관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고, 총괄과 더불어 각 조직의 담당자들은 관리 조직도에 조직별로 이름, 업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관리조직별 임무 예시(1) - 내부 관리 조직이 뚜렷한 공연장

관리 조직	책임자	인원	담당업무
무대기술부	김00	00명	무대시설, 음향, 조명 유지 관리
공연기획부	박00	00명	공연 기획, 진행, 매표 등
관객관리부	최00	00명	객석 구역 안전 관리, 관객 관리

참고 관리조직별 임무 예시(2) - 관리 인력이 부족한 공연장

관리 영역	책임자	담당업무
무대시설	홍길동	- 무대시설, 음향, 조명시설 관리 - 무대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공연 단체 안전교육 실시 - 비상 대피로 관리
	위탁관리	- 공연 중 조명 및 음향시설 운영 및 관리 - 공연자 안전 관리
객석공간	홍길동	- 피난 및 소방시설 자체 점검 - 객석시설 관리(객석의자, 출입문 설치 및 작동 상태)
	위탁관리	- 관객 입·퇴장 관리 - 공연 중 객석 구역 안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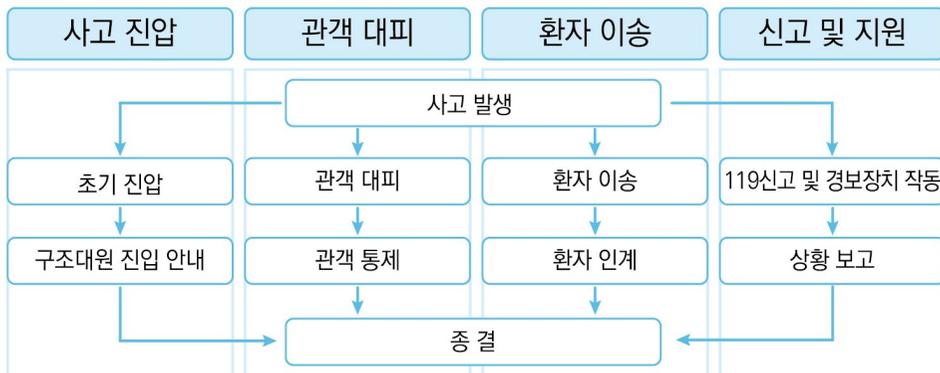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가)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재해대처계획서에는 화재 또는 사고, 재난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시 관객 안전을 위해 취하여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재한다. 재해대처계획에는 긴급조치 절차를 포함하여 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긴급조치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긴급 조치 절차는 최초 발견자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치, 2차 피해 예방조치를 거쳐 종결까지 체계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참조 ‘비상 시 조치계획’ 작성 예시



비상 역할	책임자	연락처	임무
총괄	홍길동	010-000-0000	총괄 책임자
사고 진압 (무대)	무대 감독	010-000-0000	초기 대응 및 자체 사고 진압
관객 대피 (객석)	기획	010-000-0000	관객 대피 및 출입구 개방 사고 발생 구역 차단
환자 이송	조명 감독	010-000-0000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신고 및 지원	음향 감독	010-000-0000	협조 기관 신고 및 상황 보고, 협조 기관 인계

※ 비상 역할별 책임자 위임 시 작성 사항(내부 조직으로 구성될 경우 생략)
“비상 역할별 책임자는 매 공연장을 이용하는 대관 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이며, 대관 단체가 변경될 때마다 위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여 공연장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 비상 시 역할별 책임자 지정

- 비상 역할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비상 상황에 따른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을 권장한다.
- 내부 인력으로 구성하지 못할 경우,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 단체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환경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하여 공연 중 비상 상황이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비상 연락 체계

비상 연락 체계는 크게 공연장 관리조직과 협조 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연장 관리 조직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따라서 조직을 세분화 할 수 있다. 협조 기관은 크게 소방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재해대처계획서에는 비상 상황 시 업무별로 편성된 내부 조직의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가 명확하게 기입되어야 하며, 협조기관 명칭과 이에 따른 직통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 '비상 연락 체계' 작성 예시

비상 역할	성 명	연락처	임무
총괄	홍길동	010-000-0000	총괄 책임자
관객 대피(객석)	김00	010-000-0000	관객 대피 안내 및 대피 유도
	김갑0	010-000-0000	출입문 개방 및 관객 대피
사고 진압(무대)	이00	010-000-0000	초동 대응(소화기구 사용)
	이갑0	010-000-0000	주변 인화물질 제거 및 공연자 대피 명령
신고 및 협력	박00	010-000-0000	119신고 및 상황 보고
	박갑0	010-000-0000	경보 장치 작동 및 비상집결지 관리
응급구호	최00	010-000-0000	응급 환자 구호

협조기관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00소방서	현장대응단	최00	000-0000-0000
00소방서	재난안전과	최00	000-0000-0000
00구청	문화체육과	강00	000-0000-0000
00병원	응급실	강00	000-0000-0000
한국전력공사 00지점	안전관리처	장00	000-0000-00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00	000-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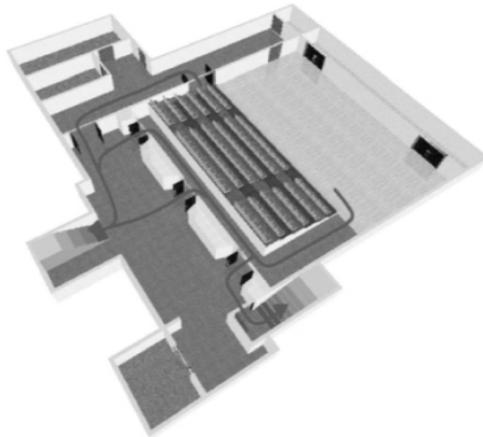
※ 비상 역할별 담당자 위임 시 작성 사항(내부 조직으로 구성될 경우 생략)

“비상 역할별 담당자는 공연장을 이용하는 대관 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이며, 대관 단체가 변경될 때마다 위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여 공연장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 비상대피로

비상대피로는 관객이 객석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까지의 대피경로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피경로는 관객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가 없는 단순한 경로로 지정되어야 한다.

참고 '비상대피로' 예시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라) 피난안내 실시 계획 수립

공연법 제11조의5,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4,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2(피난안내 대상 등)에 따라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공연 전 관객을 대상으로 피난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가) 화재사고 예방 계획

화재사고 예방 계획 작성에 앞서서 화재 취약구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높은 열이 발생하는 구역과 타기 쉬운 물체가 비치되어 있는 곳 그리고 전기 장비 및 배선이 복잡하게 설치된 장소 등이 화재 취약구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재 취약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가능성에 대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그리고 공연 종사자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을 권장한다.

화재사고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계획에서는 공연장에서 가까운 곳의 협조 기관(소방서, 병원 등)을 파악하여 협조 기관 명칭과 직통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참조 ‘화재예방 계획’ 작성 예시

- 화재 취약 구역 및 시설
 - 1) 조명기 전원 케이블 등 배선 및 접속부
 - 2) 배전반 및 디머실
 - 3) 조명시설과 인접한 무대막
- 화재 예방 점검 계획
 - 1) 화재 취약구역 자체점검
 - 조명기 전원 케이블 등 배선 및 접속부
 - 점검시기 : 자체 안전점검 실시(주간, 월간)
 - 점검방법 : 육안점검(케이블 배선 및 접속 상태 확인)
 - 배전반 및 디머실
 - 점검시기 : 자체 안전점검 실시(주간, 월간)
 - 점검방법 : 육안점검(케이블 배선 상태 확인), 작동점검(차단기, 디머 채널 정상 유·무 확인)
 - 무대 공간
 - 점검시기 : 무대 세트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
 - 점검대상 : 조명기 인접 무대막 등
 - 점검방법 : 육안점검(막 손상 여부 확인, 조명기와 접촉 물체 유·무 확인)
→ 조명시설 주변 불필요 물질 제거 및 청소 등
 - 2) 소방서와 협동 점검
 - 소방 시설 및 피난시설 점검
 - 담당자 : 시설관리부 소방 담당 직원 (길00)
 - 점검시기 : 재해대처계획 신고 후 *00월 00일 00시 예정
 - 점검대상 : 소화기, 비상통로, 출입구 등
 - 점검방법 : 소방서 직원과 함께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통로 점검
- 소방 안전교육
 - 1) 교육대상 : 비상 관리 조직 구성원(공연 단체 구성원)
 - 2) 교육시간 : 대관 전 1시간 이상
 - 2) 교육강사 : 공연장 총괄 책임자 (홍길동)
 - 3) 교육내용 :
 - 화재 취약 구역 설명
 - 화재발생 시 행동 및 조치 요령
 - 초기진화 및 소방시설 사용법
 - 화재 시 관객 대피유도 요령
- 화재예방 협조 기관
 - 1) 00 소방서(김길동), 010-0000-0000,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점검, 안전교육
 - 2) 지방자치단체(정길동), 010-0000-0000, 점검 지원

나)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인명피해 방지조치는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협조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인명 피해 발생 시 협조 기관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협조 기관의 위치 및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곳의 협조기관을 파악하여 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응계획은 편성된 비상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연장 환경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인명피해 방지 계획' 작성 예시

○ 인명피해 방지 협조 기관

- 1) 00 소방서(김길동), 010-0000-0000, 환자이송
- 2) 00 병원(이길동), 010-0000-0000, 응급의료센터

○ 비상 조직의 임무 및 역할

비상 조직	임무 및 역할
총괄	총괄 책임자
사고진압	초기 대응 및 자체 사고 진압
관객 대피	관객 대피 및 출입구 개방, 사고 발생 구역 차단
환자 이송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신고 및 지원	협조 기관 신고 및 상황 보고, 협조 기관 연계

○ 화재 발생 시 조치 사항

- 1) 사고 진압(무대)
 - 소화기 사용
 - *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소화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간다.
 - *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한다. 이 때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 주변 인화 물질 제거
 - * 화재 발생 구역 주변에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인화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 공연자 대피
 - * 무대 및 분장실에 있는 공연자를 즉시 대피시킨다.
- 2) 관객 대피(객석)
 - 출입구 개방
 - * 관객들이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출입구를 개방한다.
 - 관객 대피
 - * 관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앞사람을 밀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게 유도하고, 대피경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관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사고 지역 진입 차단
 - * 대피한 관객 등이 화재 발생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3) 신고 및 협력

- 소방서 신고
 - * 화재 발생 지역과 위치, 화재 규모 등을 소방서에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 * 구조대원이 현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객 대피반과 협조하여 진입 경로를 안내한다.

※ 119 신고 요령

- 공연장의 주소와 화재 발생 건물 층수(지상, 지하), 그리고 발생 구역을 안내한다.
- 전화를 끊지 말고 소방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응급·구호

- 환자 이송
 - * 화재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시킨다.
- 응급 처치
 -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 정전 발생 시 조치 사항

- 1) 사고 진압
 - 정전 원인 파악
 - * 정전원인을 파악하여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전파하고 조치를 강구한다.
- 2) 관객 대피
 - 관객 안정
 - * 정전에 의해 공연이 잠시 중지된 것을 알리며 관객의 동요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 관객 대피 실시
 - * 정전이 장시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연 취소를 안내하고 관객 대피를 실시한다.
- 3) 신고 및 협력
 - 협조 기관 신고
 - * 정전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전기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신고하여 관계자의 도움을 요청한다.

○ 응급 환자 발생 시 조치 사항

- 1) 사고 진압
 - * 무대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움직이는 무대장치를 정지시킨다.
 - * 무대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킨다. (단, 환자의 상태가 위급할 경우에는 환자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주변 위험물질을 제거한다.)
- 2) 관객 대피
 - 응급 의료 기구 준비
 - * 구급상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도구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현장 질서 유지
 - *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현장 질서를 유지시킨다.
- 3) 신고 및 협력
 - 협조 기관 신고
 - * 119와 협조기관에 신고하여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고, 119의 전달사항을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 구조대원 진입로 안내
 - * 환자의 위치를 구조대원이나 전문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린다.
- 4) 응급·구호
 - 주변인 확인
 - * 환자와 동행한 사람을 파악하여 환자의 나이, 지병을 확인한다.
 - 응급 처치
 - * 119의 의뢰지도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구호하며, 구조대원이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인계한다.

4)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공연장운영자는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라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공연자”는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공연자 안전교육은 공연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된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의 주기 및 교육 시간은 “공연 전 1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공연자가 받아야 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연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연자 안전교육을 위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교육 영상 자료 콘텐츠 제공과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다음의 “공연자 안전교육 종류 및 실시 방법”을 참고하여 공연장 환경에 적합하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도 영상자료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영상자료로 배포 예정)

참고 ‘공연자 안전교육’ 종류 및 실시 방법

구분	교육 종류	실시 방법	공연장운영자 관리사항
자체 교육	자체 집합 교육	- 공연장에서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자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직접 또는 전문가를 통한 교육 실시	- 자체 교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교육자료, 교육대상자 서명, 교육사진 등)
	영상자료 활용 교육	-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 자체 교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교육대상자 서명 등)
위탁 교육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한 온라인 교육 수료증 제출 안내 - 수료증 확인 후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공연장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안내 등)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동안 수료증 보관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접속 방법

- ①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 포털사이트에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검색
 - <https://www.stagesafety.or.kr>
- ② 사이버아카데미 직접 접속 : <http://safety.kbrainc.com>

※ 안내 사항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은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공연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예시

※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 교육 시기 : 공연장 사용 전, 신규 인력 배치 시(해당 인원내 한해)
- 교육 대상 :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 단체 직원 전체(출연진 포함)
- 교육 실시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위탁 수행
 - * 공연장 대관계약 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한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
 - * 공연자 안전교육 수수료 증 제출 요구 및 확인
- 자체 교육 실시
 - * 공연장 위험요인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 * 소방 및 대피시설 안내(소화기 위치, 대피경로 및 피난유도등 관리 안내)
 - * 비상연락망 및 비상 대응 계획 전달
- 교육 결과 관리
 - * 사이버아카데미 교육 수수료증 보관(2년)
 - * 자체 교육 실시 이력 관리

참고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이력 관리표

※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이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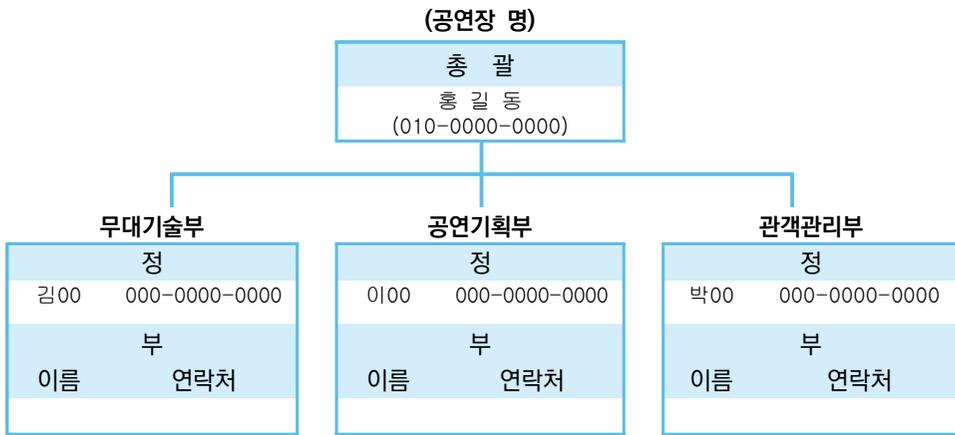
공연자 교육 이력					
No.	성명	소속(공연명)	교육명	교육일자	서명
1	이○○		현장 집체 교육	00-00-00	
2	박○○		현장 집체 교육	00-00-00	
3	강○○		현장 집체 교육	00-00-00	
4	최○○		현장 집체 교육	00-00-00	
5	장○○		현장 집체 교육	00-00-00	

- ※ 안전교육 수수료 혹은 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 공연자 안전교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혹은 교육교재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3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예시

1. 공연시설이나 장소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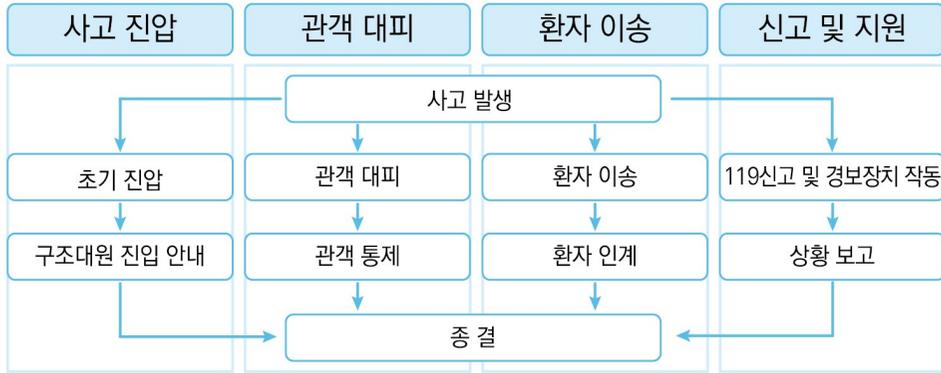
1) 관리 조직도



관리 조직	책임자	인원	담당업무
무대기술부	김00	00명	무대시설, 음향, 조명 유지 관리
공연기획부	박00	00명	공연 기획, 진행, 매표 등
관객관리부	최00	00명	객석 구역 안전 관리, 관객 관리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1) 비상 시 조치 계획



비상 역할	책임자	연락처	임무
총괄	홍길동	010-000-0000	총괄 책임자
사고 진압 (무대)	무대감독	010-000-0000	초기 대응 및 자체 사고 진압
관객 대피 (객석)	기획	010-000-0000	관객 대피 및 출입구 개방 사고 발생 구역 차단
환자 이송	조명감독	010-000-0000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신고 및 지원	음향감독	010-000-0000	협조 기관 신고 및 상황 보고, 협조 기관 인계

“비상 역할별 책임자는 매 공연장을 이용하는 대관 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이며, 대관 단체가 변경될 때마다 위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여 공연장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2) 비상연락망

비상 역할	성 명	연락처	임무
총괄	홍길동	010-000-0000	총괄 책임자
관객 대피(객석)	김00	010-000-0000	관객 대피 안내 및 대피 유도
	김갑0	010-000-0000	출입문 개방 및 관객 대피
사고 진압(무대)	이00	010-000-0000	초동 대응(소화기구 사용)
	이갑0	010-000-0000	주변 인화물질 제거 및 공연자 대피 명령
신고 및 협력	박00	010-000-0000	119신고 및 상황 보고
	박갑0	010-000-0000	경보 장치 작동 및 비상집결지 관리
응급 구호	최00	010-000-0000	응급 환자 구호

협조기관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00소방서	현장대응단	최00	000-0000-0000
00소방서	재난안전과	최00	000-0000-0000
00병원	응급실	강00	000-0000-0000
한국전력공사 00지점	안전관리처	장00	000-0000-00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00	000-0000-0000

“비상 역할별 담당자는 공연장을 이용하는 대관 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이며, 대관 단체가 변경될 때마다 위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여 공연장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3) 피난안내도

참고 예시

비상대피도

Emergency Exit Map



화재시 대피방법	소화전 사용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시 "불이야"라고 크게 외친다.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피난길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한다. 대피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전함을 열고 모스를 확인한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소화전 밸브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한다. 노즐을 잡고 불이 난 방향으로 물을 분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빼고 불을 향한다. 제어를 느슨다. 바깥을 등지고 분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kci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인합격관리처

본 피난안내도는 관람객들의 안전한 관람관람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인합격관리처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긴급전화 화재신고 119

4) 피난안내 실시 계획

- 피난안내유형 :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또는 하우스매니저 등의 직접안내
- 시간 : 매 회 관객 입장 후 공연 시작 전까지

참고 피난안내 영상 예시



참고 음성 피난 안내 메시지 예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00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비상시 피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공연장은 00건축물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바라보고 계시는 무대의 우측 출입문과 이어진 비상계단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0공연장은 관객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연장 출입구별로 관객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비상시에는 반드시 관객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아동이 있으면 관객안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수건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자세를 낮추어 이동하시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위험하오니 계단을 통하여 대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CASE 1) 안개효과를 사용하는 공연일 경우 아래의 내용 추가

본 공연에서 공연 연출을 위해 무대에서 안개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공연 연출용 연기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공연을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SE 2) 화염(폭죽)효과를 사용하는 공연일 경우 아래의 내용 추가

본 공연은 공연 연출을 위해 무대에서 화염(폭죽)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리허설을 통해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에 안심하시고 공연을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 화재 예방 계획

가) 화재 취약 구역 및 시설

- (1) 조명기 전원 케이블 등 배선 및 접속부
- (2) 배전반 및 디머실
- (3) 조명시설과 인접한 무대막

나) 화재 예방 점검 계획

(1) 화재 취약구역 자체점검

- 조명기 전원 케이블 등 배선 및 접속부
 - 점검시기 : 자체 안전점검 실시(주간, 월간)
 - 점검방법 : 육안점검(케이블 배선 및 접속 상태 확인)
- 배전반 및 디머실
 - 점검시기 : 자체 안전점검 실시(주간, 월간)
 - 점검방법 : 육안점검(케이블 배선 상태 확인),
작동점검(차단기, 디머 채널 정상 유·무 확인)
- 무대 공간
 - 점검시기 : 무대 세트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
 - 점검대상 : 조명기 인접 무대막 등
 - 점검방법 : 육안점검(막 손상 여부 확인, 조명기와 접촉 물체 유·무 확인)
→ 조명시설 주변 불필요 물질 제거 및 청소 등

(2) 소방서와 협동 점검

- 소방 시설 및 피난시설 점검
 - 담당자 : 시설관리부 소방 담당 직원 (길00)
 - 점검시기 : 재해대처계획 신고 후
* 00월 00일 00시 예정
 - 점검대상 : 소화기, 비상통로, 출입구 등
 - 점검방법 : 소방서 직원과 함께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통로 점검

다) 소방 안전교육

- (1) 교육대상 : 비상 관리 조직 구성원(공연 단체 구성원)
- (2) 교육시간 : 대관 전 1시간 이상
- (3) 교육강사 : 공연장 총괄 책임자 (홍길동)
- (4) 교육내용 :
 - 화재 취약 구역 설명
 - 화재발생 시 행동 및 조치 요령
 - 초기진화 및 소방시설 사용법
 - 화재 시 관객 대피유도 요령

라) 화재예방 협조 기관

- (1) 00 소방서(김길동), 010-0000-0000,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점검, 안전교육
- (2) 지방자치단체(정길동), 010-0000-0000, 점검 지원

2) 인명피해 방지조치 계획

가) 인명피해 방지 협조 기관

- (1) 00 소방서(김길동), 010-0000-0000, 환자이송
- (2) 00 병원(이길동), 010-0000-0000, 응급의료센터

나) 비상 조직의 임무 및 역할

비상 조직	임무 및 역할
총괄	총괄 책임자
사고진압	초기 대응 및 자체 사고 진압
관객 대피	관객 대피 및 출입구 개방, 사고 발생 구역 차단
환자 이송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신고 및 지원	협조 기관 신고 및 상황 보고, 협조 기관 인계

다) 화재 발생 시 조치 사항

(1) 사고 진압(무대)

- 소화기 사용
 - *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소화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간다.
 - *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한다. 이 때 출입구를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 주변 인화 물질 제거
 - * 화재 발생 구역 주변에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인화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 공연자 대피
 - * 무대 및 분장실에 있는 공연자를 즉시 대피시킨다.

(2) 관객 대피(객석)

- 출입구 개방
 - * 관객들이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출입구를 개방한다.
- 관객 대피
 - * 관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앞사람을 밀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대피경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관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사고 지역 진입 차단
 - * 대피한 관객 등이 화재 발생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3) 신고 및 협력

- 소방서 신고
 - * 화재 발생 지역과 위치, 화재 규모 등을 소방서에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 * 구급대원이 현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객 대피반과 협조하여 진입 경로를 안내한다.

※ 119 신고 요령

- 공연장의 주소와 화재 발생 건물 층수(지상, 지하), 그리고 발생 구역을 안내한다.
- 전화를 끊지 말고 소방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응급·구호

- 환자 이송
 - * 화재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시킨다.
- 응급 처치
 -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라) 정전 발생 시 조치 사항

(1) 사고 진압

- 정전 원인 파악
 - * 정전원인을 파악하여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전파하고 조치를 강구한다.

(2) 관객 대피

- 관객 안정
 - * 정전에 의해 공연이 잠시 중지된 것을 알리며 관객의 동요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 관객 대피 실시
 - * 정전이 장시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연 취소를 안내하고 관객 대피를 실시한다.

(3) 신고 및 협력

- 협조 기관 신고
 - * 정전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전기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신고하여 관계자의 도움을 요청한다.

마) 응급 환자 발생 시 조치 사항

(1) 사고 진압

- * 무대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동 중인 무대장치를 정지시킨다.
- * 무대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킨다. (단, 환자의 상태가 위급할 경우에는 환자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주변 위험물질을 제거한다.)

(2) 관객 대피

- 응급 의료 기구 준비
 - * 구급상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도구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현장 질서 유지
 - *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현장 질서를 유지시킨다.

(3) 신고 및 협력

- 협조 기관 신고
 - * 119와 협조기관에 신고하여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고, 119의 전달사항을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 구조대원 진입로 안내
 - * 환자의 위치를 구조대원이나 전문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린다.

(4) 응급·구호

- 주변인 확인
 - * 환자와 동행한 사람을 통해 환자의 나이, 지병을 확인한다.

- 응급 처치
 - * 119의 의료지도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구호하며, 구조대원이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인계한다.

바) 지진 발생 시 조치 사항

(1) 사고 진압반(무대구역)

- 무대시설 비상 정지
 - * 공연 중 이상 진동에 의해 무대 위 물건들이 흔들리면 구동중인 무대시설을 비상 정지 시킨다.
- 지진 발생 알림
 - * 무대에 있는 공연자에게 지진이 발생했다고 큰 소리로 알린다.
- 출입문 개방
 - * 무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개방한다.

(2) 관객 대피반(객석구역)

- 지진 발생 알림
 - * 관객에게 지진이 발생했다고 큰 소리로 알리고 안전자세를 취하라고 명령한다.
- 출입문 개방
 - * 객석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개방한다.

(3) 관객 대피 및 응급환자 확인

- 지진이 멈춘 후 관객 대피 실시
 - * 지진이 멈추면 관객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만약 건축물에서의 지진 행동요령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따른다.]
- 환자 발생 여부 확인
 - *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사) 정전 발생 시 조치 사항

(1) 사고 진압반

- 정전 원인 파악
 - * 정전원인을 파악하여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전파하고 조치를 강구한다.

(2) 관객 대피반

- 관객 안정
 - * 정전에 의해 공연이 잠시 중지된 것을 알리며 관객의 동요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 관객 대피 실시
 - * 정전이 장시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연 취소를 안내하고 관객 대피를 실시한다.

(3) 신고 및 협력반

- 협조 기관 신고
 - * 정전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전기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신고하여 관계자의 도움을 요청한다.

4.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 공연자 안전교육

가)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 (1) 교육 시기 : 공연장 사용 전, 신규 인력 배치 시(해당 인원예 한해)
- (2) 교육 대상 :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 단체 직원 전체(출연진 포함)
- (3) 교육 실시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위탁 수행
 - * 공연장 대관계약 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한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
 -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 요구 및 확인
- (4) 자체 교육 실시
 - * 공연장 위험요인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 * 소방 및 대피시설 안내(소화기 위치, 대피경로 및 피난유도등 관리 안내)
 - * 비상연락망 및 비상 대응 계획 전달
- (5) 교육 결과 관리
 - * 사이버아카데미 교육 수료증 보관(2년)
 - * 자체 교육 실시 이력 관리

나) 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 실시 계획

- (1) 교육 시기 : 공연장 사용 전, 신규 인력 배치 시(해당 인원예 한해)
- (2) 교육 대상 : 관객안전요원 등
- (3) 교육 실시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관객안전요원 영상자료 활용

다) 자체 교육(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이력 관리

공연자 교육 이력					
No.	성명	소속(공연명)	교육명	교육일자	서명
1	이○○		현장 집체 교육	00-00-00	
2	박○○		현장 집체 교육	00-00-00	
3	강○○		현장 집체 교육	00-00-00	
4	최○○		현장 집체 교육	00-00-00	
5	장○○		현장 집체 교육	00-00-00	

2

PART

중·대규모 공연장

• 객석 수 500석 이상 •

• 참고사항 •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는 소규모 공연장과 중·대규모 공연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하 내용은 객석 수 500석 이상인 중·대규모 공연장에 해당합니다.
중·대규모 공연장 부분은 공연장을 관리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제1장 재해 예방조치

1. 개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공연장은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교육(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실시 계획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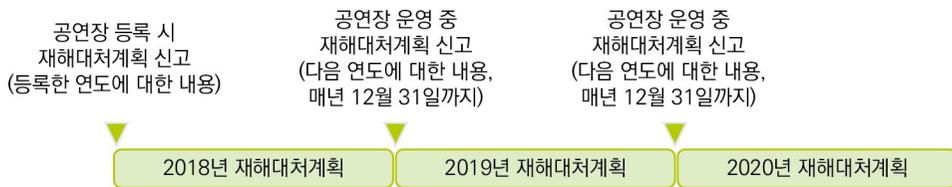
※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500석 이상 중·대규모 공연장)

- 1) 재해대처계획서
 -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비 계상 내용
- 3) 안전관리조직 구성(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4) 안전교육 실시 이력 및 계획(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2. 신고 방법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해예방조치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연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을 접수받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처리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월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재해대처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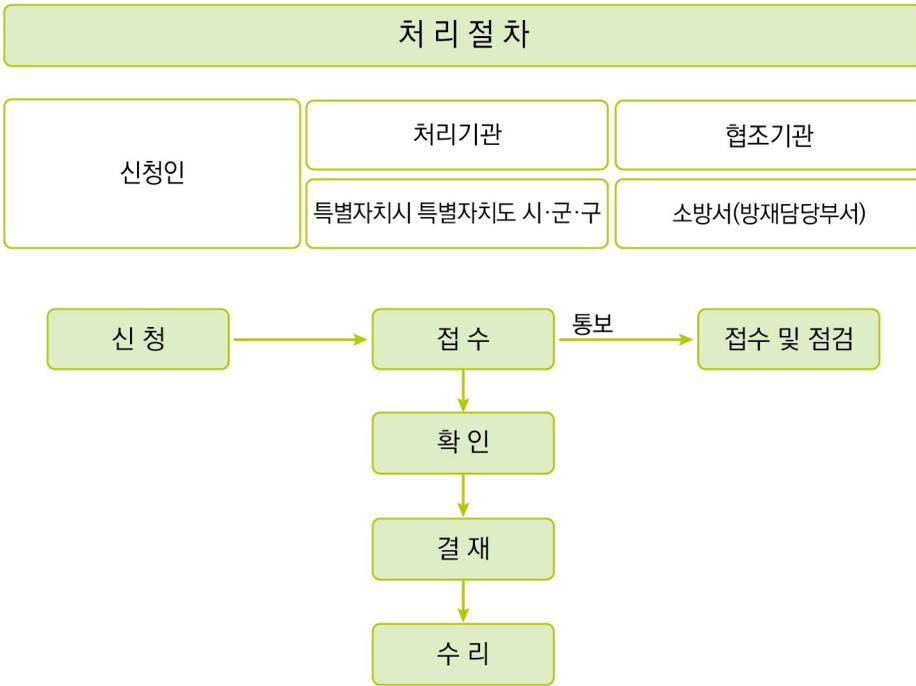
이미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연장은 개별 공연장별(등록된 공연장만 해당)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연장 등록 정보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

3. 처리 절차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확인/결재/수리를 통해 행정 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해당 문서를 접수받고 내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관할 처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보완을 신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대처계획 신고자는 이러한 요구 절차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공연장운영자등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공연장 혹은 공연현장 운영 현황에 맞춰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해야 하며, 재해대처계획 신고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비 계상 내용,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교육 실시 계획이 뚜렷해야 한다.

[그림 2-1]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제2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요령

1. 재해대처계획 신고

1) 신고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되, ①공연장운영자작성사항, ③운영자, ④공연장을 공연장 등록 정보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와 함께 신고한다.

※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공연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4)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처계획서 첨부자료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가) 관리 조직도

관리조직도는 공연장 관리를 위한 조직을 기능별·역할별로 구분하여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별도로 명시함을 권장한다.

나) 담당자의 역할 및 임무 지정

총괄 책임자는 각 조직간 소통과 현장 통솔을 주관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여, 관객 대피 및 공연 중단 여부의 1차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각 조직의 담당자는 해당 조직의 신입(경력, 직급 등)을 얻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선임된 총괄 책임자와 각 조직의 담당자들은 관리 조직도에 조직별로 담당자의 이름, 주요 담당 임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가) 비상 연락 체계

비상 연락 체계는 크게 내부 조직과 협조 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부 조직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따라서 조직을 세분화 할 수 있다. 협조 기관은 크게 소방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재해대처계획서에서는 비상 상황 시 업무별로 편성된 내부 조직의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가 명확하게 기입되어야 하며, 협조 기관 명칭과 이에 따른 직통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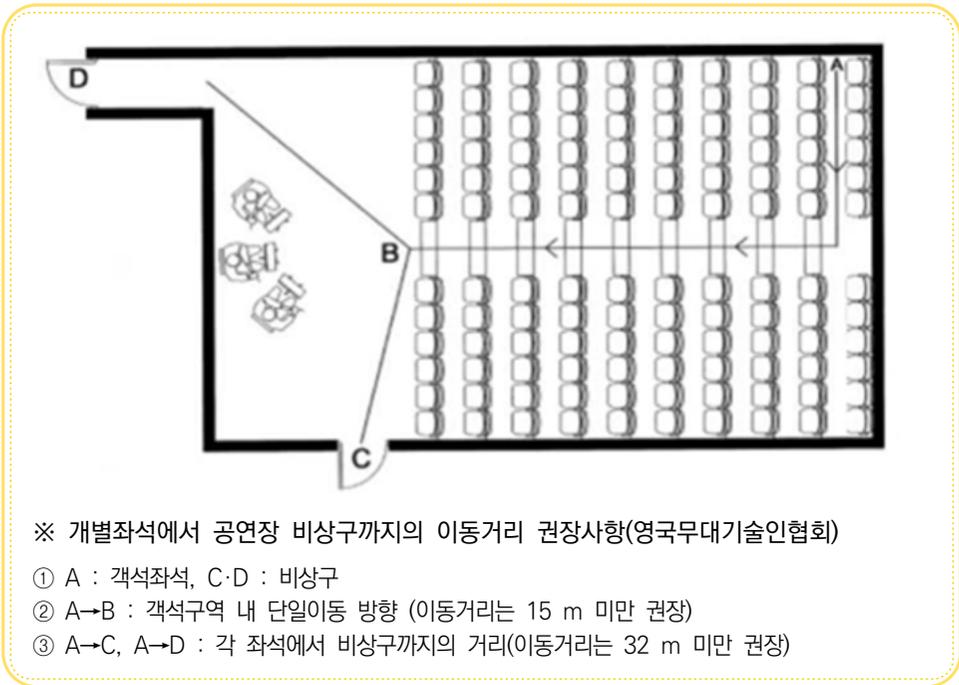
나)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재해대처계획서에는 화재 또는 사고, 재난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시 관객 안전을 위해 취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 상황 시 대응 절차와 계획을 충분한 내부 회의를 통해 수립해야 하며, 대응 절차는 최초 발견자로부터 시작해서 현장 대응, 관객 대피, 협조기관 연계 대처를 통해 사고 종결까지 순차적으로 역할에 따라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가상의 위험 발생에 따른 도상 훈련(역할 및 행동요령 토의)을 통해 공연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연장 안전을 위해서는 공연장의 구조에 따른 위험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위험요인을 발견하였으면, 공연장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타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방대책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담당자의 임무 및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문서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비상 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비상 시 대피절차는 관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연장의 인력 자원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대피로는 관객이 객석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까지의 대피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피경로는 관객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가 없는 단순한 경로로 지정해야 하며, 객석 공간에서의 대피경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



라) 피난안내 실시 계획 수립

공연법 제11조의5,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4,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2(피난안내 대상 등)에 따라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공연 전 관객을 대상으로 피난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가) 화재사고 예방 계획

화재사고 예방 계획 작성에 앞서서 화재 취약구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취약 구역이란, 예를 들어 높은 열이 발생하는 구역과 타기 쉬운 물체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나, 전기 장비 및 배선이 복잡하게 있는 장소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을 공연장 관리하는 모든 직원과 공연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화재 예방 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권장한다.

화재 예방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연장 관리 인력과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연장을 관리하는 모든 조직이 모여서 계획 수립하는 것을 권장하며, 화재 발생 시 자체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동 체계를 마련하고, 구조기관 혹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연장에서 가까운 곳의 협조기관을 파악하고 기관 명칭과 직통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안전사고 예방 계획

공연이 진행되는 장소는 대중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선 공연장 관리자 등의 경험 및 전문가 자문, 전문 서적, 사고사례집 등을 통해 안전 취약 구역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취약 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 조치 사항을 모색해야 한다.

관리 방안 및 예방 조치 사항을 착안할 때에는 공연장을 관리하는 모든 조직이 모여서 위험요인의 경중을 분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공연장운영자는 위험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공연장 관리자 등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을 권장한다.

다)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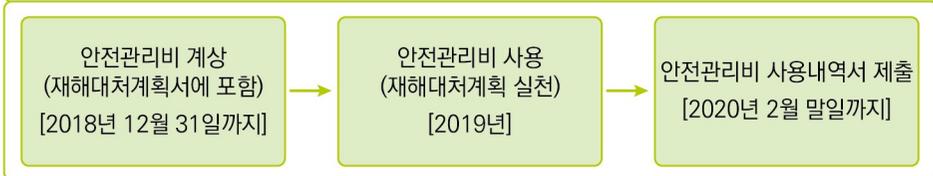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관련 담당자가 비상 상황에서 침착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연장운영자는 대응 체계 수립부터 교육, 훈련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재진압, 환자 응급 이송 및 구조 등을 위해 협조기관과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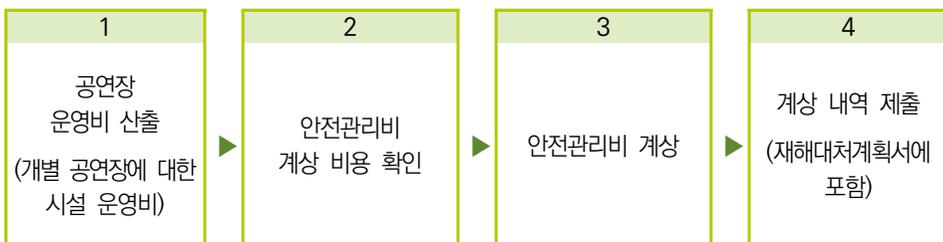
가) 안전관리비 계상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 내역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내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이 시행되는 연도에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계상부터 내역서 제출까지의 과정 (2019년 적용 재해대처계획 예시)



참고 안전관리비 계상 절차



(1) 공연장 운영비 산출

공연장운영비란, 연간 공연장(무대시설, 객석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구 분	세부 내용(예)
인건비	공연장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 인건비
	공연장 운영을 위한 행정 담당자 인건비
	시설관리자 인건비
경상사무비	인쇄 및 복사비
	회의비
	통신요금
관리운영비	업무운영비
	임대료
	외주 용역비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시설유자보수비	무대시설 유자보수
	객석시설 유자보수
	각종 점검에 따른 비용
사업비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대관 등 기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공연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 비용 제외)

500석 이상의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하나의 공연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공연장이 하나의 공연 시설에 포함되어, 공연시설 전체에 대해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연법 상 안전관리비는 객석 수 500석 이상의 등록된 공연장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연장운영비 또한 개별 공연장 마다 별도로 산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연장 운영 예산은 공연시설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되기에 개별 공연장에 대한 운영비 산출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확실히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은 공연장의 면적, 업무 범위 등에 따라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예시)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공연장 운영비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

가.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 예산 중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만 구분

여러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는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이며, 연간 예산을 세부 공연장 별로 나눠서 산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 관리 예산 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즉 시설을 운영/관리/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유지·보수비, 사무비(행정, 홍보, 기획 등) 등을 우선 구분한다. (단, 공연시설 예산에 포함된 공연 단체 예산 및 자체 공연 제작비용은 제외한다.)

나. 개별 공연장운영비 산출

“가”목에 따라 연간 공연시설 또는 복합 건축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예산 비용이 분리되었다면, 전체 시설 연면적 중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공연장에 대한 면적 비율을 파악한다. 그리고 “개별 공연장 연면적/공연시설 연면적”에 따른 비율로 예산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예산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예산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 적용하고, 경계가 모호한 예산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면적 비율로 예산을 구분할 것을 권장한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비용 확인

위와 같이 연간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산출되었으면,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안전교육 및 훈련
-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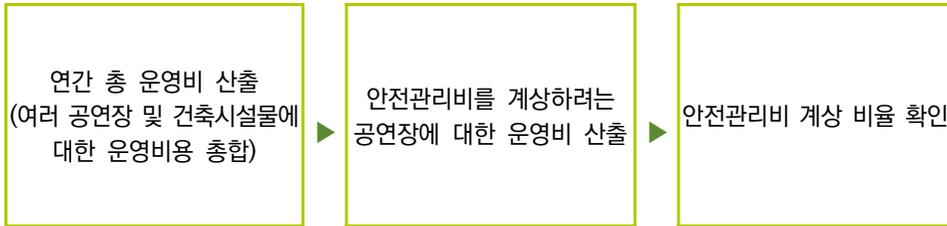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는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계획된 안전관리비 사용 예상 금액이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전년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당해연도에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서류상 편성된 예산 항목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안전관리비 계상은 각 공연장마다 예산 비목 및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양식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과 안전관리비가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되어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참고 [예시] “복합 공연시설” 중 “개별 공연장”에 대한 연간 공연장운영비 산출



- “복합 공연시설” 연간 총 운영비

안전제도 안내서에 따르면 “공연장운영비”에는 공연제작을 위한 비용과 공연단체 운영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공연장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해당하는 예산만 포함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 공연시설 전체 예산 중 공연장 운영에 대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다.

비목	세목	예산(백만원)	내역
인건비	상용임금	1,300	공연단체 인건비 제외
	일용임금	200	공연 안내원 운영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500	시설 유지관리비, 전기세, 냉·난방비 등
	임차료	100	공연장비 및 악기임차
	시설장비유지비	30	청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복리후생비	20	직원 복리후생비 (공연단체 직원 제외)
	관리용역비	1,600	청사 시설관리, 미화관리, 경비관리 등
	자산취득비	700	공연장 운영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비
	고용부담금	120	연금지급금 및 법정부담금
건설비	환경개선비	150	A공연장 환경개선
	개보수비	500	B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
	공연 폐기물 처리비	50	공연 폐기물 처리비
합 계		5,270	-

※ 공연단체의 상주인력 인건비, 공연제작 비용(출연료, 무대세트 제작) 등은 공연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 개별 공연장 운영비 산출

복합 공연시설의 운영비 예산은 공연장 개별로 편성되지 않고, 전체 공연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만 편성되기에 공연장 개별 운영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면적 비율에 따라 공연장 운영비를 배분하였다.

• 범용 운영비 산출

복합 공연시설 운영비 중 예산을 개별 공연장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운영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비목	세목	예산	범용 운영비	비고
인건비	상용임금	1,300	1,300	-
	일용임금	200	200	-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500	500	-
	임차료	100	100	-
	시설장비유지비	30	30	-
	복리후생비	20	20	-
	관리용역비	1,600	1,600	-
	자산취득비	700	700	-
	고용부담금	120	120	-
건설비	환경개선비	150	-	A공연장 전용 운영비
	개보수비	500	-	B공연장 전용 운영비
	폐기물 처리비	50	50	
합계		5,270	4,620	-

• 개별 공연장 운영비 산출

* A공연장

(단위 : 백만원)

복합 공연시설 연면적 (a)	연면적		범용 운영비 (d)	개별 공연장 운영비		A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g=e+f)
	A공연장 연면적 (b)	연면적 비율 (c=b/a)		A공연장 운영비 할당액 (e=d×c)	A공연장 전용 운영비 (f)	
33,000 m ²	18,000 m ²	0.55	4,620	2,541	150	2,691

* B공연장

(단위 : 백만원)

복합 공연시설 연면적 (a)	연면적		범용 운영비 (d)	개별 공연장 운영비		B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g=e+f)
	B공연장 연면적 (b)	연면적 비율 (c=b/a)		B공연장 운영비 할당액 (e=d×c)	B공연장 전용 운영비 (f)	
33,000 m ²	4,300 m ²	0.13	4,620	600	500	1,100

* C공연장

(단위 : 백만원)

복합 공연시설 연면적 (a)	연면적		범용 운영비 (d)	개별 공연장 운영비		C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g=e+f)
	C공연장 연면적 (b)	연면적 비율 (c=b/a)		C공연장 운영비 할당액 (e=d×c)	C공연장 전용 운영비 (f)	
33,000 m ²	1,400 m ²	0.04	4,620	185	0	185

- 안전관리비 최소 계상 금액 확인

* A공연장

(단위 : 백만원)

A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안전관리비 최소 계상 금액
2,691	0.01	26.91

* B공연장

(단위 : 백만원)

A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안전관리비 최소 계상 금액
1,100	0.01	11

* C공연장

(단위 : 백만원)

A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안전관리비 최소 계상 금액
185	0.01	1.85

- A공연장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수립

* 위에서 산출된 A공연장 안전관리비 최소 계상 금액을 초과하도록 차기연도의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18,305,535원

1) 안전총괄책임자 인건비*

: 102,680원/(일인) × 20일 × 12(월) × 1인 × 5%* = 1,232,160원

2) 안전관리담당자 인건비*

: 102,680원/(일인) × 20일 × 12(월) × 2인 × 15%* = 7,392,960원

3) 객석안전요원(하우스어셔) 인건비**

: 9,089원/(시간인) × 5시간/일 × 122.5일 × 6인 × 20% = 6,680,415원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인건비 산정 근거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겸직으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
 [본업 대비 안전관련업무 비중 : 안전총괄책임자(5%), 안전관리담당자(15%)]

** 객석안전요원(하우스 어서) 인건비 산정 근거

: 하우스어서의 업무는 관객 편의와 관객 안전이므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을 전체업무의 1/5 수준으로 정하였다.

4) 안전관리조직 업무 수당 : 3,000,000원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 13,000,000원

- 1) 안전진단 지적사항 개선 보수비 : 5,000,000원
- 2) 소방시설 설치비(청정소화기 및 고체에어로졸소화기 설치) : 3,000,000원
- 3)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음성 제작비 : 5,000,000원

○ 보호장비의 구입비 : 900,000원

- ① 안전모 구입 : 10,000원 × 10개 = 100,000원
- ② 안전화 구입 : 80,000원 × 10개 = 800,000원

○ 안전교육 및 훈련 비용 : 1,600,000원

- 1)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 200,000원
- 2)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 400,000원
- 3) 공연자 안전교육 교보재 구매 : 1,000,000원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비용 : 4,000,000원

- 1) 반기별 자체 안전점검 위탁 용역 : 4,000,000원

※ 차기연도 A공연장 안전관리비 총 예산 : 37,805,535원 (A공연장 운영비 결정액의 1.4%)

나)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조직은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500석 이상 1,000석 미만의 공연장은 안전총괄책임자 1명·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안전총괄책임자 1명·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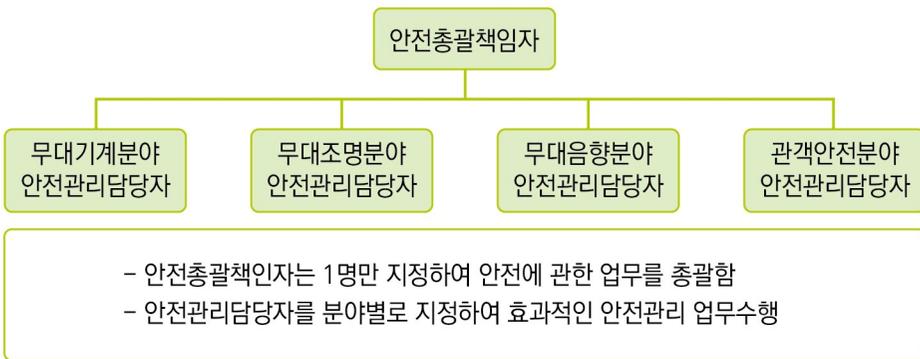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장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위험 상황 시 공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장에서 실무적인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해야 하므로, 안전에 대한 기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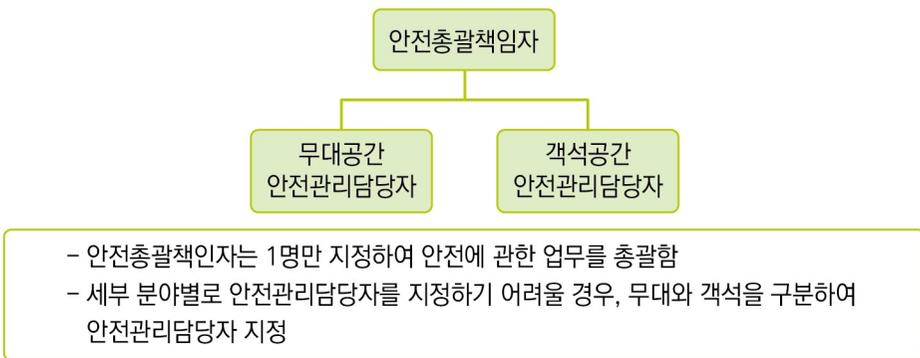
위와 같이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면 그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조직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도를 만들 것을 권장한다.

참고 안전관리조직 구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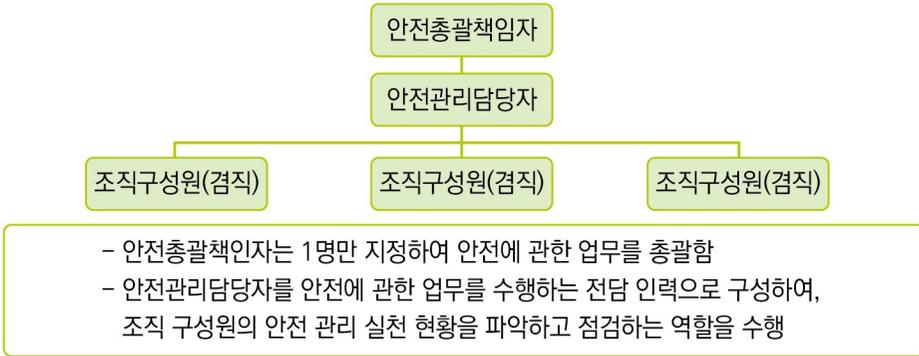
[그림 2-2] (1안) 안전관리담당자를 공연장 관리 분야별로 지정



[그림 2-3] (2안) 안전관리담당자를 공연장 공간별로 지정



[그림 2-4] (3안) 안전관리조직을 검직 부서로 지정



다) 안전관리조직 업무수행 계획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지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계획은 재해대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중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은 자격이 있는 강사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므로,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자로 하여금 공연법에 따른 안전교육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자는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연장운영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자가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연법에 따른 연자 안전교육의 주기 및 교육 시간은 “공연 전 1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공연자가 받아야 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연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연자 안전교육을 위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교육 영상 자료 콘텐츠 제공과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 환경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공연자 안전교육’ 종류 및 실시 방법

구분	교육 종류	실시 방법	공연장운영자 관리사항
자체 교육	자체 집합 교육	- 공연장에서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자 안전 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직접 또는 전문가를 통한 교육 실시	- 자체 교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교육자료, 교육대상자 서명, 교육사진 등)
	영상자료 활용 교육	-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 자체 교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교육대상자 서명 등)
위탁 교육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한 온라인 교육 수료증 제출 안내 - 수료증 확인 후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공연장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안내 등)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동안 수료증 보관

(3) 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

관객안전요원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의 안전을 위해 관객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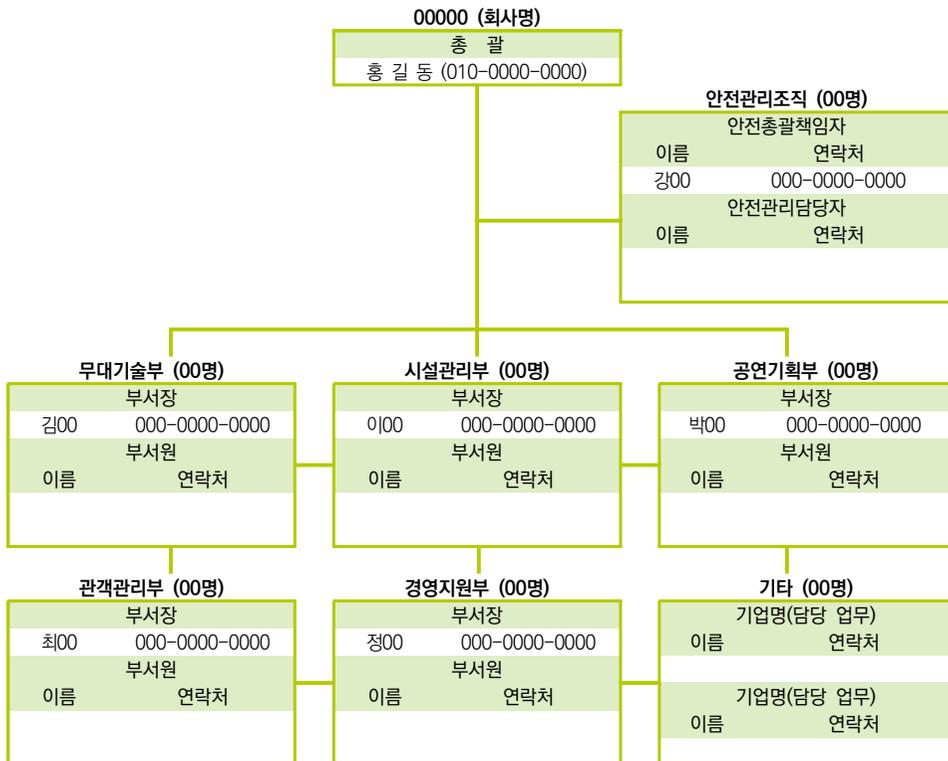
※ 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 내용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영상자료)

- 관객안전요원의 정의 및 특징
- 관객안전 위험도에 따른 주의사항
- 비상 시 행동요령 및 응급사고 조치

제3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예시

1. 공연시설이나 장소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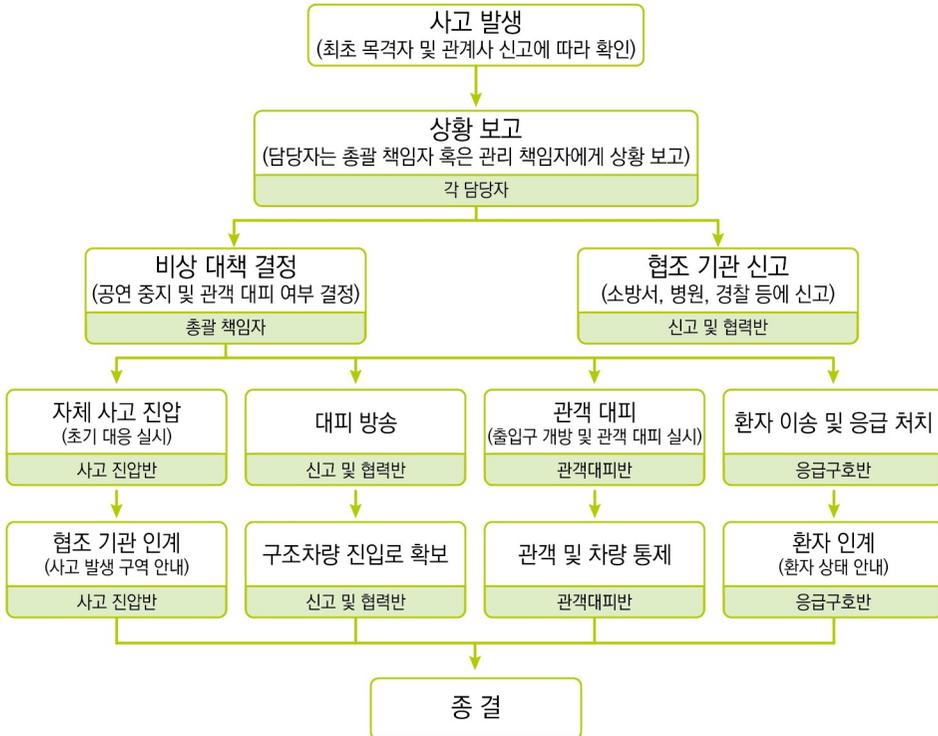
1) 관리 조직도



관리 조직	책임자	인원	담당업무
안전관리조직	강00	00명	관객, 공연자 안전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무대기술부	김00	00명	무대시설, 음향, 조명 유지 관리
시설관리부	이00	00명	전기, 기계, 방재설비 관리
공연기획부	박00	00명	공연 기획, 진행, 매표 등
관객관리부	최00	00명	객석 구역 안전 관리, 관객 관리
경영지원부	정00	00명	총무, 대관, 회계, 홍보 등의 업무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1) 비상 시 조치 계획



2) 비상연락망

가) 00공연장 비상 조직 구성

비상 조직	책임자	연락처	임무 및 역할	비고
총괄	홍길동	010-000-0000	총괄 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담당
관객대피반	김00	010-000-0000	관객 대피 및 출입구 개방 사고 발생 지역 차단	관객관리부 담당
사고진압반	이00	010-000-0000	초기 대응 및 자체 사고 진압	무대기술부 및 시설관리부 담당
신고 및 협력반	박00	010-000-0000	협조 기관 신고 및 상황 보고, 협조 기관 인계	공연기획부 담당
응급구호반	최00	010-000-0000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경영지원부 담당

나) 00공연장 비상연락망

비상 조직	성 명	연락처	임무 및 역할	비고
관객 대피반 (김00)	김00	010-000-0000	관객 대피 총괄	
	김갑0	010-000-0000	출입문 개방 및 사고 발생 지역 차단	
	김을0	010-000-0000	위험 구역 통제 및 관객 대피	
	김병0	010-000-0000	A 구역 관객 대피	
	김정0	010-000-0000	B 구역 관객 대피	
사고 진압반 (이00)	이00	010-000-0000	사고 진압 총괄	
	이갑0	010-000-0000	무대 사고 대응, 소화기 사용	
	이를0	010-000-0000	전기 차단 및 전기 사고 대응, 소화기 사용	
	이병0	010-000-0000	소화전 사용	
	이정0	010-000-0000	소화전 보조	
신고 및 협력반 (박00)	박00	010-000-0000	신고 및 협력 총괄	
	박갑0	010-000-0000	소방서 신고 및 상황 보고	
	박을0	010-000-0000	병원 신고 및 상황 보고	
	박병0	010-000-0000	경찰서 신고 및 상황 보고	
	박정0	010-000-0000	긴급 차량 통로 확보	

비상 조직	성 명	연락처	임무 및 역할	비고
응급·구호반 (최00)	최00	010-000-0000	응급 및 구호 총괄	
	최갑0	010-000-0000	응급 처치 실시	
	최을0	010-000-0000	환자 이송	
	최병0	010-000-0000	환자 이송	
	최정0	010-000-0000	응급 구호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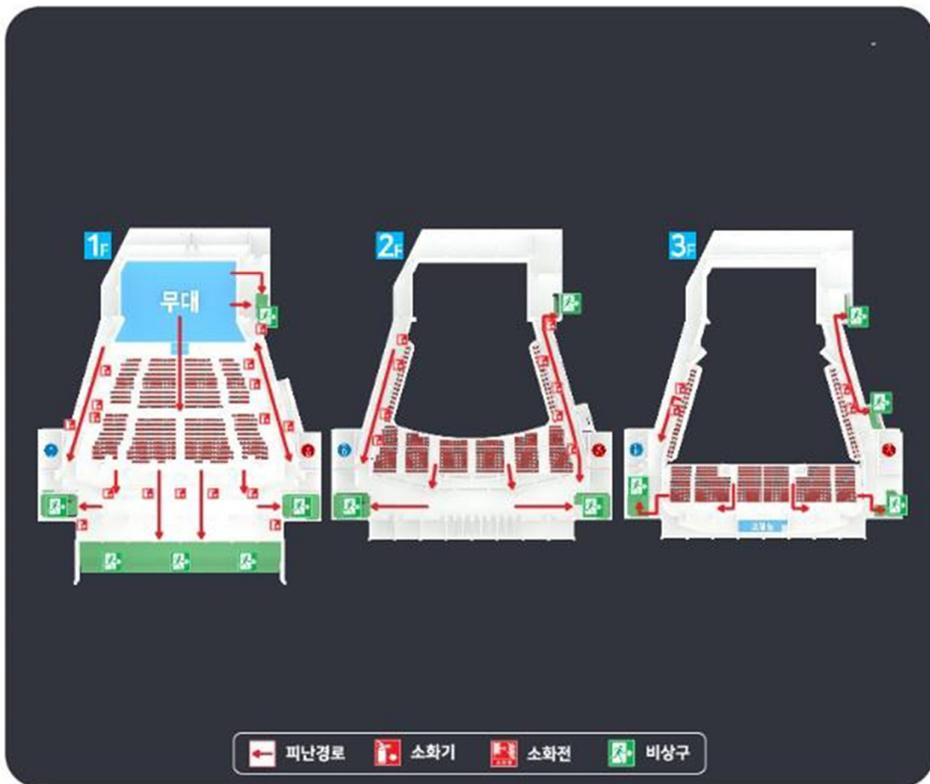
다) 00공연장 비상 시 협조 기관 연락처

협조기관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00소방서	현장대응단	최00	000-0000-0000	
00소방서	재난안전과	최00	000-0000-0000	
00구청	문화체육과	강00	000-0000-0000	
00병원	응급실	강00	000-0000-0000	
한국전력공사 00지점	안전관리처	장00	000-0000-0000	

3) 피난안내도

비상대피도

Emergency Exit Map



화재시 대피방법



1.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이동한다



2.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3. 하층부 대피가 곤란한 경우 옥상으로 대피

소화기 사용방법



1.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출된 쪽을 들고 불을 쫓는다



3. 체제를 수른다



4. 바람을 등지고 분사한다

소화전 사용방법



1. 소화전함을 열고 포스를 화재지역까지 전개한다



2. 소화전 열쇠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개방한다



3. 노출된 쪽을 들고 화염을 향해 분사한다

심폐소생술 순서



1. 의식 및 호흡확인



2. 119신고 및 AED요청



3. 가슴 압박 30회



4. 인공호흡 2회

응급환자 발생시



1. 직원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2.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한다



3. 환자의 인원을 확보한다



4. 119로 신고한다

4) 피난안내 실시 계획 (예시)

가) 관람객 대기공간

- 피난안내유형 : 영상 재생
- 시간 : 관람객 입장시 ~ 공연시작 전
- 방법 : 공연 홍보 영상과 병행 상영 가능



나) 공연장 객석공간

- 피난안내유형 :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또는 하우스 매니저 등의 직접안내
- 시간 : 매 회 관객 입장 후 공연 시작 전까지

참고 음성 피난 안내 메시지 예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00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비상시 피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0공연장은 00건축물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바라보고 계시는 무대의 우측 출입문과 이어진 비상계단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0공연장은 관객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연장 출입구별로 관객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비상시에는 반드시 관객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아동이 있으면 관객안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수건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자세를 낮추어 이동하시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위험하오니 계단을 통하여 대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CASE 1) 안개효과를 사용하는 공연일 경우 아래의 내용 추가

본 공연에서 공연 연출을 위해 무대에서 안개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공연 연출용 연기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공연을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SE 2) 화염(폭죽)효과를 사용하는 공연일 경우 아래의 내용 추가

본 공연은 공연 연출을 위해 무대에서 화염(폭죽)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리허설을 통해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에 안심하시고 공연을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 화재사고 예방 계획

가) 화재 취약 구역 및 시설

- (1) 조명기 전원 케이블 등 배선 및 접속부
- (2) 배전반
- (3) 무대공간
- (4) 조명실 및 디머실 등

나) 화재 예방 점검 계획

(1) 화재 취약구역 자체점검

- 조명기 전원 케이블 등 배선 및 접속부
 - 점검시기 : 자체 안전점검 실시(주간, 월간)
 - 점검방법
 - * 육안점검 : 케이블 배선 및 접속 상태 확인
 - * 작동점검 : 조명 채널 이상 유무 확인 및 전원 이상 여부 확인
- 배전반
 - 점검시기 : 자체 안전점검 실시(주간, 월간)
 - 점검방법 :
 - * 육안점검 : 케이블 배선 상태 확인, 차단기 고정상태 확인 등 자체 안전점검 실시
 - * 작동점검 : 차단기 및 과부하계전기 작동 상태 확인 등 자체 안전점검 실시
 - * 소화기구 점검 : 소화기 충전 상태 및 기타 소화장치 점검 등
- 무대 공간
 - 점검시기 : 무대 세트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
 - 점검대상 : 조명기 인접 무대막 등
 - 점검방법
 - * 육안점검 : 조명기 인접 무대막 혹은 세트에서 불에 탄 자국이 없는지 확인
 - * 소화기구 점검 : 소화기 충전 상태 및 기타 소화장치 점검 등
- 특수 효과(불꽃, 화염)
 - 점검시기 : 무대 세트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
 - 점검대상 : 특수효과 장치 및 설치 주변 구역

- 점검방법
 - * 육안점검 : 주변에 인화물질 제거 및 방염 상태 확인,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 * 작동점검 : 특수효과 장치 작동 상태 확인
- (2)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안전점검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소방시설법에 따름)
 - 담당자
 - * 소방시설관리업자
 - * 시설관리부 소방 담당 직원
 - 점검시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점검대상 : 관련법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점검
 -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안전점검
 - 담당자
 - * 소방시설관리업자
 - * 시설관리부 소방 담당 직원
 - 점검시기 : 10월 말
 - 점검대상 및 내용 : 체크리스트에 따름

구 분	확인 사항	점검 결과	비고
소 화 기	- 용기본체의 부식 유무		
	- 설치장소에 소화기 비치 여부		
	- 소화기 충전 상태 확인		
옥내 소화전 설비	- 소화전함, 펌프, 전동기 주위의 장애물 유무		
	- 소화전함, 호스, 노즐, 배관, 관부속, 밸브류등의 변형, 손상 부식 여부		
	- 각 밸브의 개폐조작 용이 여부		
스프링쿨러, 물분무설비	- 제어밸브의 개폐, 작동, 접근 여부		
	- 배관 및 헤드의 유수 유무		
	- 헤드주위의 작동 필요 공간이 확보 및 살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여부		
자동화재탐지·비상경보설비	- 화재발생 감지기의 적정 설치 여부		
	- 비상전원의 방전 여부		
피난설비	- 비상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작동 상태		
	- 비상조명등, 휴대용조명등 작동 상태		
	-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여부		
	- 비상구 문의 밖으로 열림 및 용이한 개방 여부		
	- 통로에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방치 여부		

다) 화재 발생 시 조치 사항

(1) 사고 진압반

- 소화기 사용
 - *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소화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간다.
 - *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한다. 이 때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 주변 인화 물질 제거
 - * 화재 발생 구역 주변에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인화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 공연자 대피
 - * 무대 및 분장실에 있는 공연자를 즉시 대피시킨다.

(2) 관객 대피반

- 출입구 개방
 - * 관객들이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출입구를 개방한다.
- 관객 대피
 - * 관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함을 밀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게 유도하고, 대피경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관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사고 지역 진입 차단
 - * 대피한 관객 등이 화재 발생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3) 신고 및 협력반

- 소방서 신고
 - * 화재 발생 지역과 위치, 화재 규모 등을 소방서에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 * 구조대원이 현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객 대피반과 협조하여 진입 경로를 안내한다.

※ 119 신고 요령

- 공연장의 주소와 화재 발생 건물 층수(지상, 지하), 그리고 발생 구역을 안내한다.
- 전화를 끊지 말고 소방서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비상경보장치 작동
 - *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작동 시킨다. [건축물 시설관리실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건물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객석등 점등 및 비상대피방송 실시
 - * 관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객석등을 점등시키고 위험상황임을 알리는 대피안내 방송을 재생한다.

(5) 응급·구호반

- 환자 이송
 - * 화재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시킨다.
- 응급 처치
 -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 화재 발생 시 조치 사항의 순서의 나열과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담당자가 위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임

라) 소방 안전교육

- (1) 교육대상 : 비상 관리 조직 구성원(공연 단체 구성원)
- (2) 교육시간 : 대관 전 1시간 이상
- (3) 교육강사 : 공연장 총괄 책임자 (홍길동)
- (4) 교육내용 :
 - 화재 취약 구역 설명
 - 화재발생 시 행동 및 조치 요령
 - 초기진화 및 소방시설 사용법
 - 화재 시 관객 대피유도 요령

마) 화재예방 협조 기관

- (1) 00 소방서(김길동), 010-0000-0000,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점검, 안전교육

역할	담당자	연락처
초기 화재 진압	김길동	000-000-0000
관객 대피	이길동	000-000-0000
응급처치	박길동	000-000-0000
신고	최길동	000-000-0000

2) 안전사고 예방 계획

가) 안전 취약요소 파악

(1) 자체 안전점검 결과 개선 회의

- 정기 회의 실시
 - 자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협의

- 긴급 회의

- 중대한 결함 및 치명적인 위험 요소 발견 시

(2) 무대세트 안전취약 요소 파악 및 관리 방안

- 무대세트 반입 전 안전 확인

- 무대장치 하중 및 설치 위치
- 전기시설 용량 확인
- 장치 반입 가능성 확인(전체 반입 및 분리 반입 여부 등)
- 작업 일정의 타당성 여부 확인

- 셋업 전 확인 사항

- 반입되는 무대장치의 작동 원리에 따른 관리적 차원의 안전요구사항 협의
- 작업자 및 스태프 사전 안전교육 실시 확인

- 공연시작 전 확인 사항

- 안전취약요소 관리 상태 점검
- 공연 전 스태프에게 관련 사항 주지

나)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

(1) 안전사고 발생 시 : 무대시설 비상정지버튼 작동 (공연 중에는 공연 중지)

(2) 환자 발생 유무 확인 : 환자 발생 시 아래의 조치계획에 따름

(3) 피해 상황 확인 : 안전사고 발생 구역 주변 피해 상태 확인

(4) 2차 피해 방지 : 사고 발생 구역 주변 통제

역할	담당자	연락처
무대시설 담당	김길동	000-000-0000
응급처치	이길동	000-000-0000
신고	박길동	000-000-0000

※ 응급환자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 및 조치사항

○ 사고 진압반

- * 무대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움직이는 무대장치를 정지시킨다.
- * 무대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킨다. (단, 환자의 상태가 위급할 경우에는 환자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주변 위험물질을 제거한다.)

○ 관객 대피반

- 응급 의료 기구 준비
 - * 구급상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도구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현장 질서 유지
 - *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현장 질서를 유지시킨다.

○ 신고 및 협력반

- 협조 기관 신고
 - * 119와 협조기관에 신고하여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고, 119의 전달사항을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 구조대원 진입로 안내
 - * 환자의 위치를 구조대원이나 전문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린다.

○ 응급·구호반

- 주변인 확인
 - * 환자와 동행한 사람을 파악하여 환자의 나이, 지병을 확인한다.
- 응급 처치
 - * 119의 의료지도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구호하며, 구조대원이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인계한다.

다) 지진 발생 시 조치 사항

(1) 사고 진압반(무대구역)

- 무대시설 비상 정지
 - * 공연 중 이상 진동에 의해 무대 위 물건들이 흔들리면 구동중인 무대시설을 비상 정지 시킨다.
- 지진 발생 알림
 - * 무대에 있는 공연자에게 지진이 발생했다고 큰 소리로 알린다.
- 출입문 개방
 - * 무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개방한다.

(2) 관객 대피반(객석구역)

- 지진 발생 알림
 - * 관객에게 지진이 발생했다고 큰 소리로 알리고 좌석에서 안전자세를 취하라고 명령한다.

- 출입문 개방
 - * 객석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개방한다.
- (3) 관객 대피 및 응급환자 확인
 - 지진이 멈춘 후 관객 대피 실시
 - * 지진이 멈추면 관객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만약 건축물에서의 지진 행동요령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따른다.]
 - 환자 발생 여부 확인
 - *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라) 정전 발생 시 조치 사항

- (1) 사고 진압반
 - 정전 원인 파악
 - * 정전원인을 파악하여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전파하고 조치를 강구한다.
- (2) 관객 대피반
 - 관객 안정
 - * 정전에 의해 공연이 잠시 중지된 것을 알리며 관객의 동요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 관객 대피 실시
 - * 정전이 장시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연 취소를 안내하고 관객 대피를 실시한다.
- (3) 신고 및 협력반
 - 협조 기관 신고
 - * 정전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전기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신고하여 관계자의 도움을 요청한다.

4.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가) 안전관리비 사용 기간 : 19년 01월 01일 ~ 19년 12월 31일

나)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 1.4%

- 안전관리비용(37,805,535원)÷공연장운영비(2,691,000,000원)×100 = 1.4%

다) 공연장운영비 : 총 2,691,000,000원

(1) “복합 공연시설” 연간 총 운영비

안전제도 안내서에 따르면 “공연장운영비”에는 공연제작을 위한 비용과 공연단체 운영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공연장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해당하는 예산만 포함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합 공연시설 전체 예산 중 공연장 운영에 대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다.

비목	세목	예산(백만원)	내역
인건비	상용임금	1,300	공연단체 인건비 제외
	일용임금	200	공연 안내원 운영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500	시설 유지관리비, 전기세, 냉·난방비 등
	임차료	100	공연장비 및 악기임차
	시설장비유지비	30	청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복리후생비	20	직원 복리후생비 (공연단체 직원 제외)
	관리용역비	1,600	청사 시설관리, 미화관리, 경비관리 등
	자산취득비	700	공연장 운영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비
	고용부담금	120	연금지급금 및 법정부담금
건설비	환경개선비	150	A공연장 환경개선
	개보수비	500	B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
	공연 폐기물 처리비	50	공연 폐기물 처리비
합 계		5,270	-

※ 공연단체의 상주인력 인건비, 공연제작 비용(출연료, 무대세트 제작) 등은 공연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음

(2) 개별 공연장 운영비 산출

복합 공연시설의 운영비 예산은 공연장 개별로 편성되지 않고, 전체 공연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만 편성되기에 공연장 개별 운영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이 면적 비율에 따라 공연장 운영비를 배분하였다.

- 범용 운영비 산출

복합 공연시설 운영비 중 예산을 개별 공연장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운영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비목	세목	예산	범용 운영비	비고
인건비	상용임금	1,300	1,300	-
	일용임금	200	200	-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500	500	-
	임차료	100	100	-
	시설장비유지비	30	30	-

비목	세목	예산	범용 운영비	비고
	복리후생비	20	20	-
	관리용역비	1,600	1,600	-
	자산취득비	700	700	-
	고용부담금	120	120	-
건설비	환경개선비	150	-	A공연장 전용 운영비
	개보수비	500	-	B공연장 전용 운영비
	폐기물 처리비	50	50	
	합계	5,270	4,620	-

- 개별 공연장 운영비 산출

복합 공연시설 연면적 (a)	연면적		범용 운영비 (d)	개별 공연장 운영비		A공연장 운영비 결정액 (g=e+f)
	A공연장 연면적 (b)	연면적 비율 (c=b/a)		A공연장 운영비 할당액 (e=d×c)	A공연장 전용 운영비 (f)	
33,000 m ²	18,000 m ²	0.55	4,620	2,541	150	2,691

라) 안전관리비용 : 총 37,805,535원

항목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18,305,535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13,000,000원
보호장비의 구입비	900,000원
안전교육 및 훈련 비용	1,600,000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비용	4,000,000원
안전 관련 보험 비용	-
계	37,805,535원

마) 안전관리비용 계상 내역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18,305,535원

- 안전총괄책임자 인건비*

: 102,680원/(일·인) × 20일 × 12(월) × 1인 × 5%* = 1,232,160원

- 안전관리담당자 인건비*

: 102,680원/(일·인) × 20일 × 12(월) × 2인 × 15%* = 7,392,960원

- 객석안전요원(하우스어셔) 인건비**

: 9,089원/(시간·인) × 5시간/일 × 122.5일 × 6인 × 20% = 6,680,415원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인건비 산정 근거**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겸직으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
[본업 대비 안전관련업무 비중 : 안전총괄책임자(5%), 안전관리담당자(15%)]

**** 객석안전요원(하우스 어셔) 인건비 산정 근거**

: 하우스어셔의 업무는 관객 편의와 관객 안전이므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을 전체업무의 1/5 수준으로 정하였다.

- 안전관리조직 업무 수당 : 3,000,000원

(2)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 13,000,000원

- 안전진단 지적사항 개선 보수비 : 5,000,000원

- 소방시설 설치비(청정소화기 및 고체에어로졸소화기 설치) : 3,000,000원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음성 제작비 : 5,000,000원

(3) 보호장비의 구입비 : 900,000원

- 안전모 구입 : 10,000원 × 10개 = 100,000원

- 안전화 구입 : 80,000원 × 10개 = 800,000원

(4) 안전교육 및 훈련 비용 : 1,600,000원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 200,000원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 400,000원

- 공연자 안전교육 교보재 구매 : 1,000,000원

(5)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비용 : 4,000,000원

-반기별 자체 안전점검 위탁 용역 : 4,000,000원

※ 차기연도 A공연장 안전관리비 총 예산 : 37,805,535원

(A공연장 운영비 결정액의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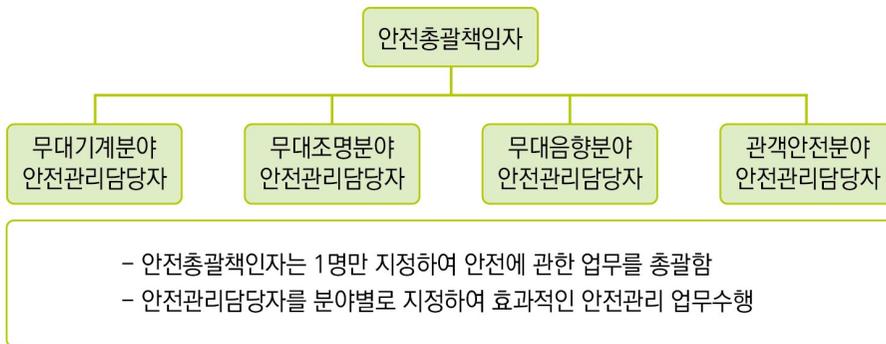
2) 안전관리조직 구성

가) 안전관리조직 지정 이력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이력				
성명	지정 연월일	소속 및 부서명*	직위 및 직책	전담/겸직 구분
김○○	00년 00월 00일		부장	겸직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이력				
성명	지정 연월일	소속 및 부서명*	직위 및 직책	전담/겸직 구분
이○○	00년 00월 00일		차장	겸직
박○○	00년 00월 00일		과장	겸직
강○○	00년 00월 00일		과장	겸직
최○○	00년 00월 00일		대리	겸직

나) 안전관리조직 구성



73

다) 안전관리조직 업무 계획

안전총괄책임자 업무 수행 계획		
담당자	담당 안전 관리 업무 내용	비고
김○○	- 연간 자체 안전검사 수행 계획 수립 - 공연장 안전규정 정비 -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수립	

안전관리담당자 업무 수행 계획		
담당자	담당 안전 관리 업무 내용	비고
이○○	-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수행 - 무대시설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리 - 무대 작업 안전 관리 - 공연자 안전교육 담당	
박○○	-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수행 - 조명 작업 안전 관리 - 조명시설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리	

안전관리담당자 업무 수행 계획		
강○○	- 음향시설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리 - 공연 전 안전관람 수칙 안내 방송 실시 - 스피커 리깅 작업 안전 관리	
최○○	- 하우스 어셔 교육 및 감독 - 객석 내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 - 응급도구 및 응급처치장비 관리 - 안전훈련 계획 수립 및 자체 훈련 실시	

3) 안전교육 실시 계획

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이력 및 계획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이력				
성명	교육 명	교육 시간	교육 실시 기관	수료일 (또는 예정일)
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집합교육)	2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2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이력 및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이력				
성명	교육 명	교육 시간	교육 실시 기관	수료일 (또는 예정일)
이○○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8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집합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이력				
성명	교육 명	교육 시간	교육 실시 기관	수료일 (또는 예정일)
박○○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8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집합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최○○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집합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다)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 (1) 교육 시기 : 공연장 사용 전, 신규 인력 배치 시(해당 인원예 한해)
- (2) 교육 대상 :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 단체 직원 전체(출연진 포함)
- (3) 교육 실시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위탁 수행
 - * 공연장 대관계약 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한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
 -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 요구 및 확인
- (4) 자체 교육 실시
 - * 공연장 위험요인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 * 소방 및 대피시설 안내(소화기 위치, 대피경로 및 피난유도등 관리 안내)
 - * 비상연락망 및 비상 대응 계획 전달
- (5) 교육 결과 관리
 - * 사이버아카데미 교육 수료증 보관(2년)
 - * 자체 교육 실시 이력 관리

라) 자체 교육(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이력 관리

공연자 교육 이력					
No.	성명	소속(공연명)	교육명	교육일자	서 명
1	이○○		현장 집체 교육	00-00-00	
2	박○○		현장 집체 교육	00-00-00	
3	강○○		현장 집체 교육	00-00-00	
4	최○○		현장 집체 교육	00-00-00	
5	장○○		현장 집체 교육	00-00-00	



3 PART

공연장 외의 장소나 시설에서의 공연

• 참고사항 •

공연장 외의 장소나 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은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 및 장소 등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에 공연을 하려는 장소나 시설 관리자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육관, 강당 등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할 경우, 시설 구조에 따른 관객 대피 등에 관한 사항은 장소나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개요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외의 장소나 시설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고 수시로 개최되는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신고 적용 지침

특정 장소나 시설(유원시설 등)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빈도)는 공연주최자, 공연물의 동일성, 공연계획서 및 안전 관리 인력 확보·배치계획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목적 범위 내에서 신고수리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 시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함

수시로 개최되는 공연은 일정한 공연기간 내*에 개최가 계획되고, 주최자·공연명·공연단 규모, 공연시설 (무대 등) 규모가 동일한 공연을 의미함

※ 사례 유원시설 내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퍼레이드 공연의 경우 재해대처계획서 신고서에 명기한 전 공연기간에 걸쳐 유효하게 실행·적용되는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 계획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했다면 최초 1회 신고로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신고 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 변경이 없는 한 별도 신고는 불요함

2. 신고 주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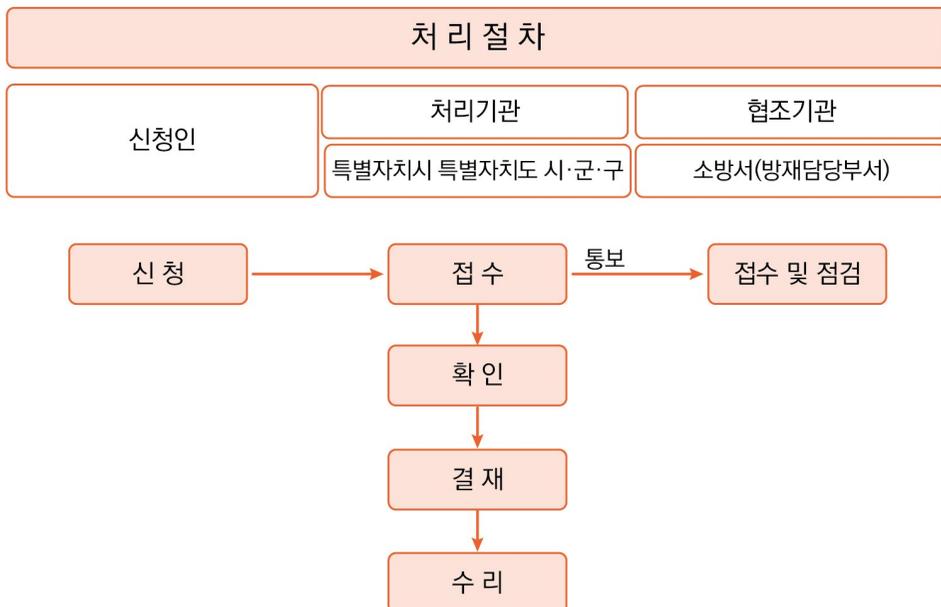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처리 절차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리기관 이라고 함)에게 신고하면 처리기관은 접수를 받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처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대처계획 신고자는 이러한 요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그림 3-1] 재해대처계획 처리 절차



(뒤쪽)

첨부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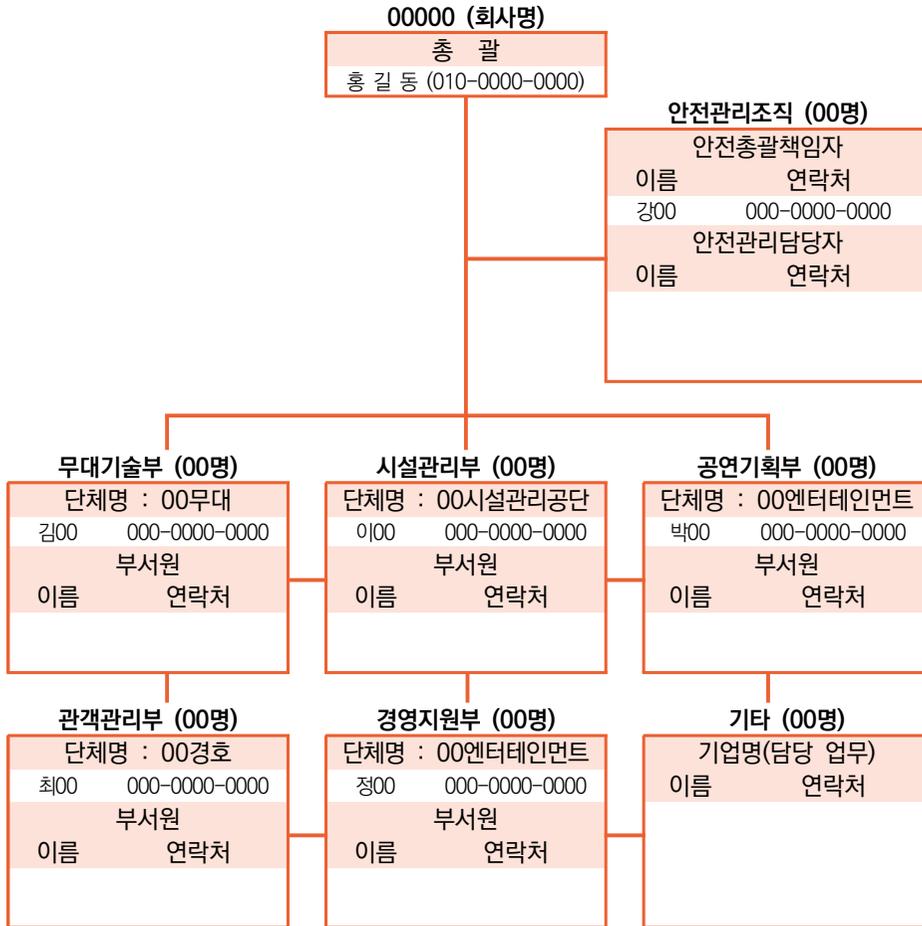
1. 공연이나 장소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 관리 조직도

관리조직도는 공연을 위한 조직을 기능별·역할별로 구분하여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은 겸직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조직으로 편성하여 관리조직도에 포함되도록 한다.

여러 회사가 모여 공연을 하는 경우, 부서를 확실히 구분한 후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간 원활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 관리조직도 예시



관리 조직	책임자	인원	담당업무
안전관리조직	강00	00명	관객, 공연자 안전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무대기술부	김00	00명	무대시설, 음향, 조명 유지 관리
시설관리부	이00	00명	전기, 기계, 방재설비 관리
공연기획부	박00	00명	공연 기획, 진행, 매표 등
관객관리부	최00	00명	객석 구역 안전 관리, 관객 및 통제수단 관리
경영지원부	정00	00명	총무, 대관, 회계, 홍보 등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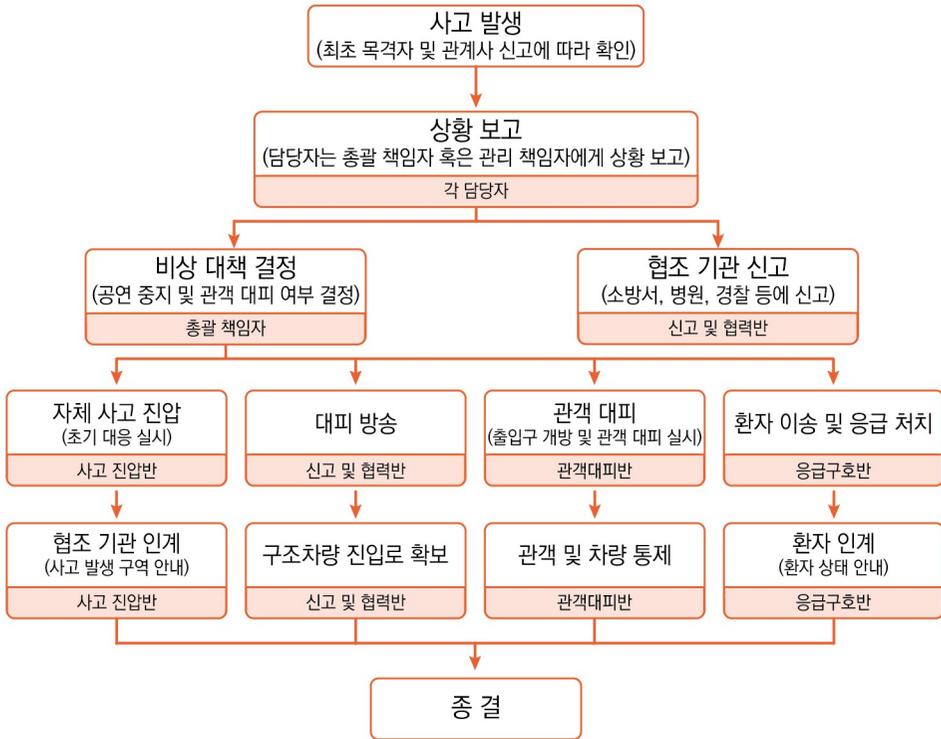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1)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는 화재, 안전사고 등 재난발생의 징후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연관계자 등이 취하여야 할 행동사항 등을 의미하며, 최초발견자로부터 시작해서 상황보고, 초동조치, 협조기관 신고 등을 거쳐 상황종결까지의 과정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연 전 사전점검 및 훈련을 통해 해당 조치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은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참고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이하 ‘비상 시 조치계획’)’ 작성 예시



2) 비상연락망 및 비상 시 역할

비상연락망에는 비상 시 조치 계획에 따른 관리책임자, 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역할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협조기관명과 부서,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함으로써 비상 시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 비상연락망의 주지

공연주최자는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구성원들이 비상연락망을 주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의 휴대하는 비표 뒷면에 비상연락망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을 붙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 '비상연락망' 작성 예시

비상 조직	책임자	연락처	임무 및 역할	비고
총괄	홍길동	010-000-0000	총괄 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담당
관객대피반	김00	010-000-0000	관객 대피 및 출입구 개방 사고 발생 지역 차단	관객관리부 담당
사고진압반	이00	010-000-0000	초기 대응 및 자체 사고 진압	무대기술부 및 시설관리부 담당
신고 및 협력반	박00	010-000-0000	협조 기관 신고 및 상황 보고, 협조 기관 인계	공연기획부 담당
응급구호반	최00	010-000-0000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경영지원부 담당

비상 조직	성 명	연락처	임무 및 역할	비고
관객 대피반 (김00)	김00	010-000-0000	관객 대피 총괄	
	김갑0	010-000-0000	출입문 개방 및 사고 발생 지역 차단	
	김을0	010-000-0000	위험 구역 통제 및 관객 대피	
	김병0	010-000-0000	A 구역 관객 대피	
	김정0	010-000-0000	B 구역 관객 대피	
사고 진압반 (이00)	이00	010-000-0000	사고 진압 총괄	
	이갑0	010-000-0000	무대 사고 대응, 소화기 사용	
	이를0	010-000-0000	전기 차단 및 전기 사고 대응, 소화기 사용	
	이병0	010-000-0000	소화전 사용	
	이정0	010-000-0000	소화전 보조	
신고 및 협력반	박00	010-000-0000	신고 및 협력 총괄	

비상 조직	성 명	연락처	임무 및 역할	비고
(박00)	박갑0	010-000-0000	소방서 신고 및 상황 보고	
	박을0	010-000-0000	병원 신고 및 상황 보고	
	박병0	010-000-0000	경찰서 신고 및 상황 보고	
	박정0	010-000-0000	긴급 차량 통로 확보	
응급·구호반 (최00)	최00	010-000-0000	응급 및 구호 총괄	
	최갑0	010-000-0000	응급 처치 실시	
	최을0	010-000-0000	환자 이송	
	최병0	010-000-0000	환자 이송	
	최정0	010-000-0000	응급 구호반 운영	

협조기관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00소방서	현장대응단	최00	000-0000-0000	
00소방서	재난안전과	최00	000-0000-0000	
00경찰서	경비교통과	정00	000-0000-0000	
00경찰서	생활안전계	정00	000-0000-0000	
00구청	문화체육과	강00	000-0000-0000	
00병원	응급실	강00	000-0000-0000	
한국전력공사 00지점	안전관리처	장00	000-0000-0000	

※ 협조기관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병원 등

3) 대피경로 안내

- (1) 시설 운영자의 협조를 받아 대피경로를 지정하고 피난안내도를 작성하고 각 출입구에 비치한다.

피난안내도는 공연기간 내 훼손·탈락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고 규격 및 포함 내용은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을 준용한다.

* 다만, 무대를 제외한 면이 피난층으로 개방되어 있는 경우 피난안내도 비치를 생략할 수있음

※ 실내 건축물에서 대피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객석에서 피난층 혹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 거리가 3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의 보행거리는 실제 관객이 통로를 통해 움직이는 거리를 의미하며, 객석을 가로지르거나 실제 구조물에 의해 보행이 불가능한 장소를 보행거리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 (2) 광장, 해변 등 실외공간에 무대와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무대 구역과 객석 구역이 구분되어야 하며 각각의 구역에서의 피난경로가 지정되어야 한다.
- (3) 공연 전에는 관람객에게 피난경로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며 공연현장의 여건에 따라 직접안내, 안내방송, 영상송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참고 '대피경로'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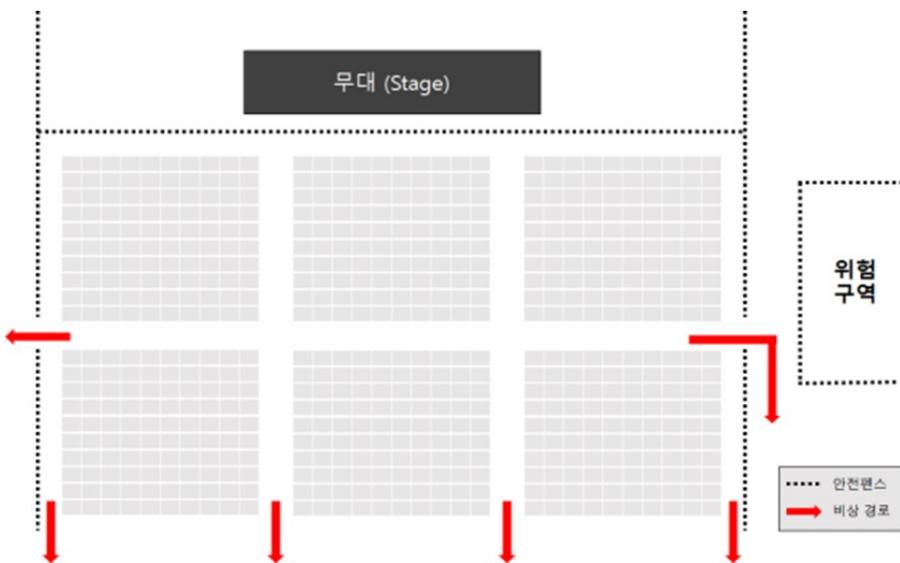
- A-Type : 실내 공연일 경우

[그림 3-2] 비상대피도 예_실내 체육관 (고양도시관리공사)



- B-Type : 야외 공연일 경우

[그림 3-3] 비상대피도 예_야외 공연



[그림 3-4] 공연장 외 공연 대피경로 안내 예시 (1)



[그림 3-5] 공연장 외 공연 대피경로 안내 예시 (2)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공연 안전을 위해서는 공연이 행해지는 시설 및 장소에 따른 위험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이 행해지는 시설 및 장소, 무대시설 그리고 무대장치 등에서 위험이 있을만한 요인을 조사한 후, 담당자-관계자 등과 회의 및 토론 등을 통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방대책은 담당자의 임무 및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계획

화재사고의 예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연 장소 주변 및 공연 진행에 따른 화재 위험 요인 파악이다. 공연의 종류, 공연을 실시하는 장소에 따라 화재 위험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공연을 하려는 장소나 시설의 관리담당자와 함께 화재 위험 요인을 결정한다.

위치	화재 위험 요인
무대 공간	전기 시설 (배전반, 발전차 등)
	조명 시설
	하부 무대장치
객석 공간 주변	특수효과 - 불꽃, 화기, 폭죽 등
	나무 숲
	인근 흡연구역

※ 공연에 따라 화재 취약 요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텝 회의 및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취약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화재 위험 요인이 결정되었으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중 화재 예방 교육은 공연 관계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함께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2) 안전사고 예방 계획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에 앞서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관리자 그리고 공연 관계자들이 사전 공연장 주변 답사, 전문가 자문, 전문 서적, 사고 사례집 등을 통해 무대시설 및 객석, 공연장 일대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요인 파악이 완료되면 사전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와 안전사고 대처 방법 등이 공연 관계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3)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인명피해 방지조치는 공연의 성격(아이돌 공연 또는 트로트 공연 등), 관객 연령대, 기상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스태프 회의 등을 통해 위험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원활한 외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협조기관과의 연계 대응 계획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인명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협조 기관의 위치 및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응계획은 편성된 비상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연 환경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의료지원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기관에 요청하여 의료 지원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의료 지원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시간, 담당자, 설치 수 등을 재해대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야외 공연 관객 안전 주의사항

- ① 주변에 안전장치가 없는 높은 지형이나, 시설은 확실히 통제한다.
- ② 객석뿐만 아니라, 관객이 이동하는 모든 곳의 지반 또는 시설물의 내하중을 파악하여 관객 추락 사고를 예방한다.
- ③ 지정석이 없는 객석이 존재할 경우, 관객 혼잡 방지 및 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 ④ 여름철 야외 공연일 경우에는 관객 탈수증상을 대비하기 위한 식수공급과 응급처치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⑤ 비상 시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차량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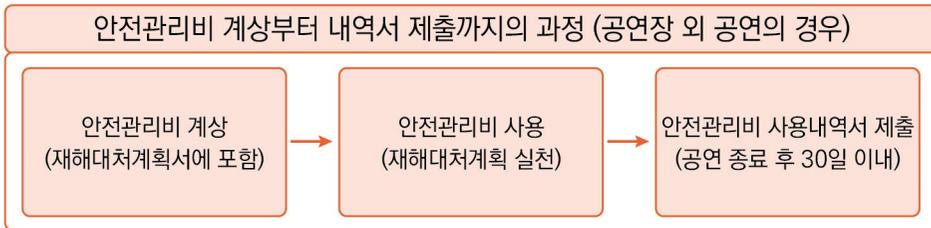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하며,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최소비율은 다음과 같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공연비용의 1.21% 이상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은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역에 따라 공연 기간 중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축제나 행사에 공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공연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되기에, 그 예산 범위는 축제나 행사 운영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확실히 정할 것을 권장한다.

참고 안전관리비 계상 절차



가) 공연 진행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지출 비용 분석

안전관리비 계상 이전에 실질적으로 공연 준비, 셋업, 진행 단계에서의 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공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 자체 안전점검
-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관리
- 안전 회의(공연 전 회의, 스태프 회의, 관객안전관리 회의 등)
- 안전교육 및 훈련(관객 안내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공연자 안전교육 등)
- 안전취약 시설, 장소 파악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관객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점검

위의 안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지출 비용을 예상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공연 기간 중,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가 원활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비 계상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의 용도로 안전관리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안전교육 및 훈련
-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다) 공연 비용 산출

공연비용은 공연을 기획·제작·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인건비	기획·제작·진행에 따른 공연 조직원의 인건비
경상사무비	공연 전반에 걸친 행정적 업무에 대한 경상 사무비 (인쇄비, 통신비, 사무비용 등)
시설 및 장비 대여비	트러스 의자, 조명, 음향 등 외부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때 소비되는 비용
시설유지·보수비	자체 보유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공연제작비	공연 및 무대를 제작하는데 소비되는 비용
공연사업비	공연자 출연료, 이동경비, 식대비 등에 소비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비 비율 확인

공연비용이 정해지면 아래의 공연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부족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예상 금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 1.21% 이상

마)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제출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은 각 공연마다 예산 비목 및 사용용도가 다르기에 별도의 신고 양식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공연법에 따른 계상 비율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비는 서류상 편성된 예산 항목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안전관리조직 구성

공연 규모별 안전관리조직 구성인원은 아래와 같다.

공연 규모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소계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1명	1명 이상	2명 이상
3천명 이상	1명	2명 이상	3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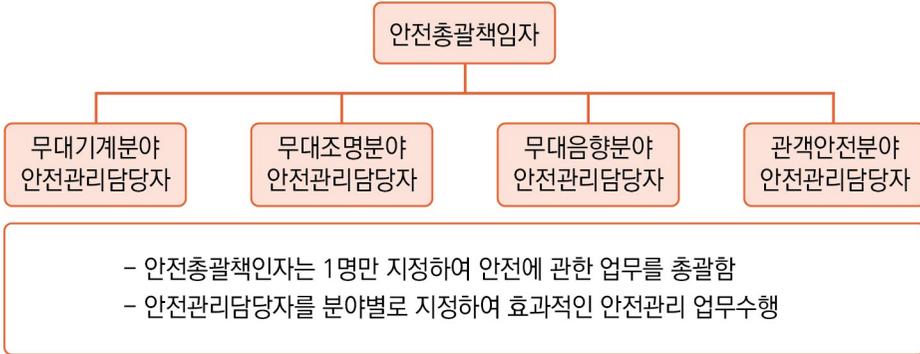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 현장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위험 상황 시 공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연 현장에서 실무적인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해야 하므로, 안전에 대한 기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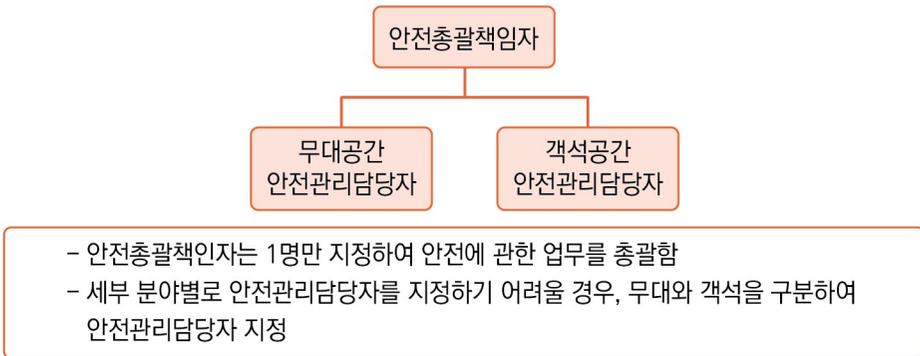
위와 같이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면 그 내용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조직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도를 만들 것을 권장한다.

참고 안전관리조직 구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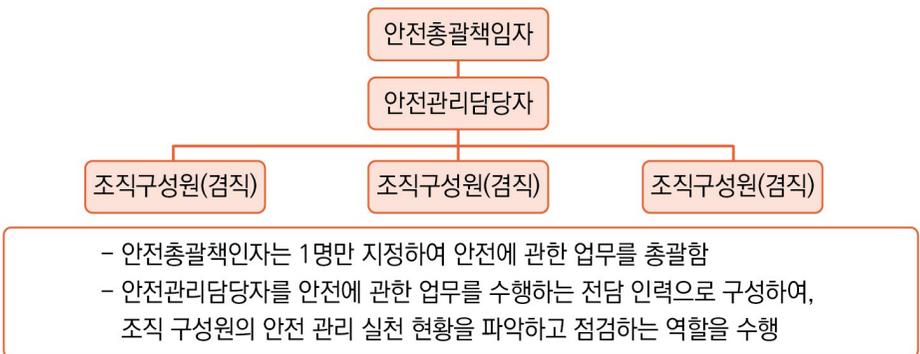
[그림 3-6] (1안) 안전관리담당자를 공연장 관리 분야별로 지정



[그림 3-7] (2안) 안전관리담당자를 공연장 공간별로 지정



[그림 3-8] (3안) 안전관리조직을 겸직 부서로 지정



3) 안전교육 실시 계획

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중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은 자격이 있는 강사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므로,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자로 하여금 공연법에 따른 안전교육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자는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연을 하려는 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자가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연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재해 대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의 주기 및 교육 시간은 “공연 전 1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공연자가 받아야 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연자 안전교육의 내용(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연자 안전교육을 위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교육 영상 자료 콘텐츠 제공과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공연장 환경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

관객안전요원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의 안전을 위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 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 내용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영상자료)

- 관객안전요원의 정의 및 특징
- 관객안전 위험도에 따른 주의사항
- 비상 시 행동요령 및 응급사고 조치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의 안전 및 통제를 위해 안전관리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구역을 통제하는 인력은 전문성이 높은 안전관리인력으로 구성하며, 관객의 안내를 주로 하는 인력은 지원자 그룹으로 구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인력이 배치되도록 한다.

장소적인 여건에 따른 배치는 관객 이동 경로와 관계자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출입구역에서부터 객석구역까지 관객 접근이 불필요한 곳과 위험 통제 구간은 확실하게 구분하여 관객 출입이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관리인력을 배치시켜야 한다. 안전한 공연의 진행을 위해서는 관객에 대한 입·퇴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연의 종류에 따라 입장 시간, 퇴장 시간, 인원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열광적인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출입문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시작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퇴장의 경우는 빠른 퇴장을 원하는 관객들이 많으므로 출구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공연 종료 전에 안전관리인력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6. 공연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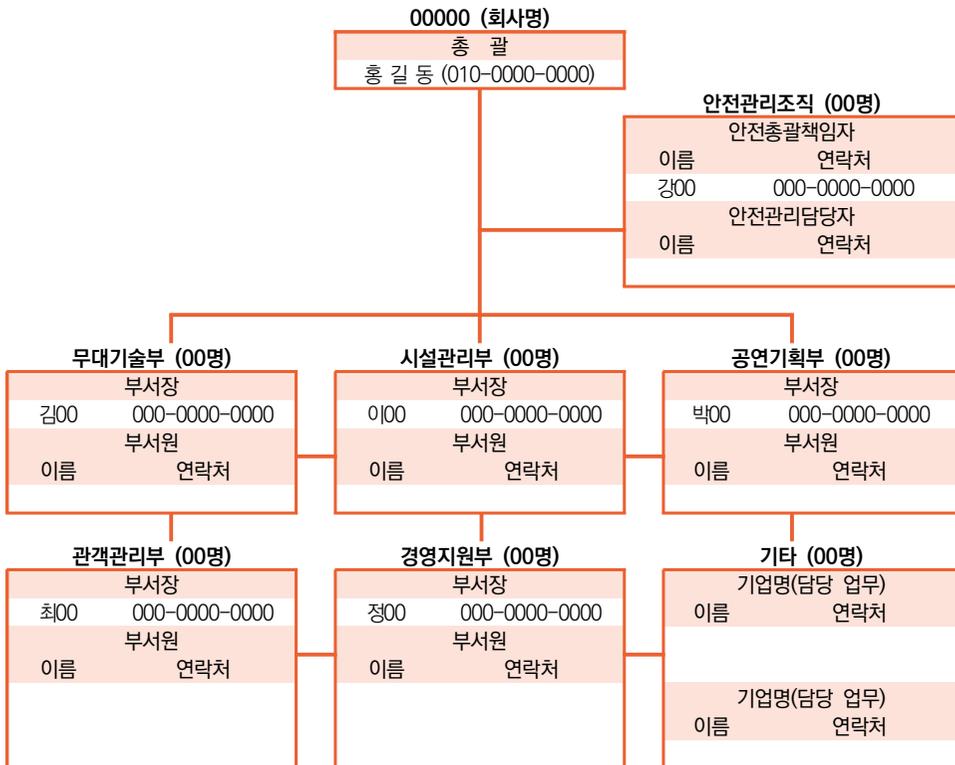
공연계획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공연에 관한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연계획서 포함 사항	내용
공연명	공연의 명칭
공연 일정	공연 일자와 시간을 작성한다. 동일한 공연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 각 공연 일자와 시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공연 장소	공연 장소 또는 공연 시설 명칭을 기입하여야 하며, 면적 규모를 포함한다.
공연 주최	공연 주최 단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기입한다.
관람 예상인원	재해대처계획 신고서에 기입한 예상 인원을 기입하며, 객석의 최대 수용인원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험가입 여부	공연 시설 및 관객 등에 대한 대물·대인 보험 또는 행사공연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정보를 기입한다.
공연시설의 배치도	객석이 되는 공간의 좌석과 주요시설(소방시설, 전기시설, 무대시설 등)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그림을 기입한다.
공연 장소 및 시설의 위치도	공연 장소 및 시설의 소재지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도를 기입한다. 또한 주변에 위험물·공사현장 등이 있을 경우 위치도에 해당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제3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예시

1. 공연시설이나 장소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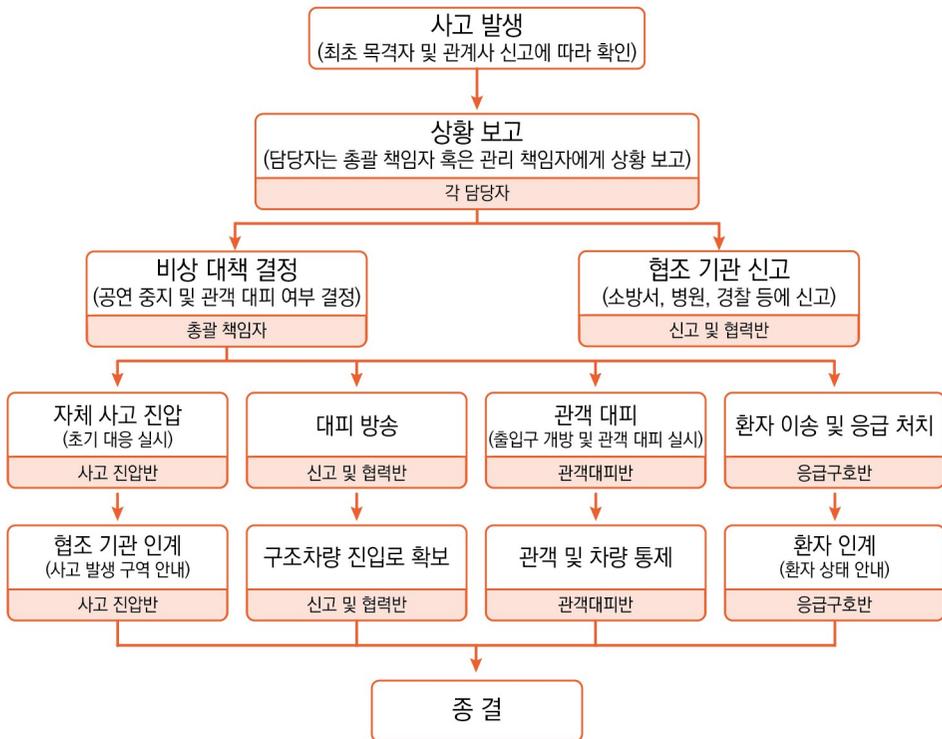
1) 관리 조직도 (예)



관리 조직	책임자	인원	담당업무
안전관리조직	강00	00명	관객, 공연자 안전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무대기술부	김00	00명	무대시설, 음향, 조명 유지 관리
시설관리부	이00	00명	전기, 기계, 방재설비 관리
공연기획부	박00	00명	공연 기획, 진행, 매표 등
관객관리부	최00	00명	객석 구역 안전 관리, 관객 관리
경영지원부	정00	00명	총무, 대관, 회계, 홍보 등의 업무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1) 비상 시 조치 계획



2) 비상연락망

비상 조직	책임자	연락처	임무 및 역할	비고
총괄	홍길동	010-000-0000	총괄 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담당
관객대피반	김00	010-000-0000	관객 대피 및 출입구 개방 사고 발생 지역 차단	관객관리부 담당
사고진압반	이00	010-000-0000	초기 대응 및 자체 사고 진압	무대기술부 및 시설관리부 담당
신고 및 협력반	박00	010-000-0000	협조 기관 신고 및 상황 보고, 협조 기관 인계	공연기획부 담당
응급구호반	최00	010-000-0000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경영지원부 담당

비상 조직	성 명	연락처	임무 및 역할	비고
관객 대피반 (김00)	김00	010-000-0000	관객 대피 총괄	
	김갑0	010-000-0000	출입문 개방 및 사고 발생 지역 차단	
	김을0	010-000-0000	위험 구역 통제 및 관객 대피	
	김병0	010-000-0000	A 구역 관객 대피	
	김정0	010-000-0000	B 구역 관객 대피	
사고 진압반 (이00)	이00	010-000-0000	사고 진압 총괄	
	이갑0	010-000-0000	무대 사고 대응, 소화기 사용	
	이를0	010-000-0000	전기 차단 및 전기 사고 대응, 소화기 사용	
	이병0	010-000-0000	소화전 사용	
	이정0	010-000-0000	소화전 보조	
신고 및 협력반 (박00)	박00	010-000-0000	신고 및 협력 총괄	
	박갑0	010-000-0000	소방서 신고 및 상황 보고	
	박을0	010-000-0000	병원 신고 및 상황 보고	
	박병0	010-000-0000	경찰서 신고 및 상황 보고	
	박정0	010-000-0000	긴급 차량 통로 확보	
응급·구호반 (최00)	최00	010-000-0000	응급 및 구호 총괄	
	최갑0	010-000-0000	응급 처치 실시	
	최을0	010-000-0000	환자 이송	
	최병0	010-000-0000	환자 이송	
	최정0	010-000-0000	응급 구호반 운영	

협조기관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00소방서	현장대응단	최00	000-0000-0000	
00소방서	재난안전과	최00	000-0000-0000	
00경찰서	경비교통과	정00	000-0000-0000	
00경찰서	생활안전계	정00	000-0000-0000	
00구청	문화체육과	강00	000-0000-0000	
00병원	응급실	강00	000-0000-0000	
한국전력공사 00지점	안전관리처	장00	000-0000-0000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병원 등

3) 피난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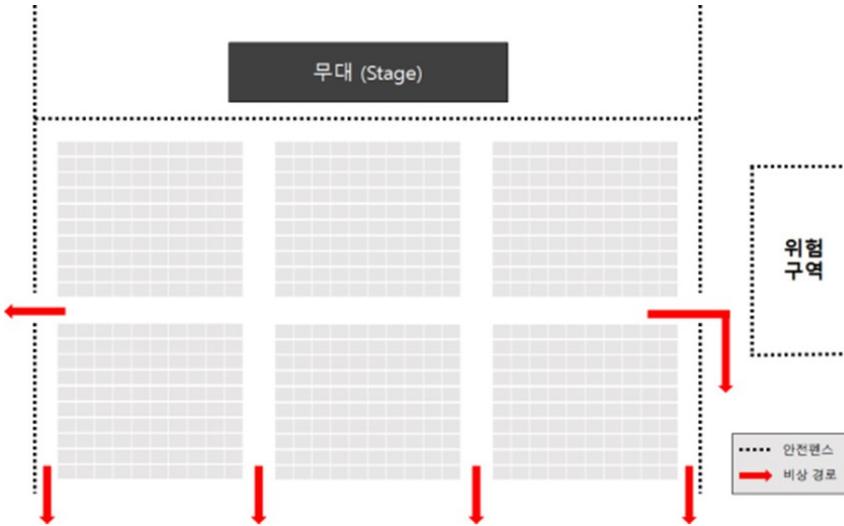
가) 예시 1: 건축물 내 공연

[그림 3-9] 비상대피도 예_실내 체육관 (고양도시관리공사)



나) 예시 2: 야외 공연

[그림 3-10] 비상대피도 예_야외 공연



- ※ 비상구 식별을 위한 배너 등 설치 예정
- ※ 공연시작 전 관객에게 비상 대피 경로 및 주의사항 안내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 화재사고 예방 계획

가) 화재 취약 구역 및 시설

- (1) 전기시설
- (2) 객석 구역 주변에 있는 나무숲
- (3) 무대 공간

나) 소방시설 및 화재 취약 구역 점검 계획

- (1) 화재 취약구역 점검
 - 전기시설 점검
 - 담당자 : 무대기술부 전기 담당 직원 (장00)
 - 점검시기 : 무대 세트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
 - 점검방법 : 육안점검(케이블 배선 상태 확인, 전장부품 작동 상태 확인 등)

- 객석 구역 주변에 있는 나무숲
 - 담당자 : 관객관리부 직원 (최00)
 - 점검시기 : 공연 전, 공연 중 20분 간격 순찰
 - 점검방법 : 육안점검(인화물질 확인 및 제거, 흡연자 통제 등)
- 무대
 - 담당자 : 무대기술부 직원 (도00)
 - 점검시기 : 무대 세트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
 - 점검대상 : 하부트랩, 상부 조명시설
 - 점검방법 : 육안점검 및 전압측정
 - 하부트랩 동력장치 작동 상태 확인, 조명기 전원 전압 상태 확인, 구동부 주변 인화물질 제거 및 청소 등

(2) 소방서와 협동 점검

- 소방 시설 및 피난시설 점검
 - 담당자 : 시설관리부 직원 (길00)
 - 점검시기 : 재해대처계획 신고 후
 - 점검대상 : 소화기, 비상통로, 출입구 등
 - 점검방법 : 소방서 직원과 함께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통로 점검

다) 화재 발생 시 조치 사항

(1) 사고 진압반

- 소화기 사용
 - * 화재를 확인하면 즉시 소화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간다.
 - *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한다. 이 때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 주변 인화 물질 제거
 - * 화재 발생 구역 주변에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인화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 전원 차단
 - * 무대 세트, 조명, 음향 등의 전원을 즉시 차단한다.
- 소화전 사용
 - * 소화전이 있는 경우, 노즐이 화재 발생 구역 근처로 갈 수 있도록 호스를 풀어둔다.
 - * 노즐이 화재 발생 구역에 도착하였을 경우 밸브를 개방하여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한다.

(2) 관객 대피반

- 관객 대피
 - * 관객의 동요를 최소화 하며 대피경로를 따라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관객들이 앞사람을 밀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 지역 진입 차단
 - * 대피한 관객 등이 사고 발생 지역에 재진입 못하도록 차단한다.
- 출입구 개방
 - * 관객들이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닫혀있는 모든 출입구를 개방한다.

(3) 신고 및 협력반

- 소방서 신고
 - * 화재 발생 지역과 위치, 화재 규모 등을 소방서에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 * 구조대원이 현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객 대피반과 협조하여 진입 경로를 안내한다.
- 경찰 신고
 - * 교통 통제, 위험 구역 통제 등을 위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한다.
 - * 신고 시,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 위치 그리고 화재 규모를 상세히 전달한다.
- 병원 신고
 - * 비상의료센터 운영 협조 및 의료진 지원을 위해 즉시 병원에 신고하도록 한다.
 - *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의 수와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며, 전문 의료진의 지시를 응급·구호반에 전달하여 환자를 보살피도록 한다.

(4) 응급·구호반

- 환자 이송
 - *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시킨다.
- 응급 처치
 -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라) 소방 안전교육

- (1) 교육대상 : 공연 관계자들에게 소방 안전교육 실시
- (2) 교육시간 : 공연 전 1시간
- (3) 교육강사 : 소방서 직원 혹은 시설관리부 소방 담당 직원 (길00)
- (4) 교육내용 :
 - 화재 취약 구역 설명
 - 화재발생 시 행동 및 조치 요령
 - 초기진화 및 소방시설 사용법
 - 화재 시 관객 대피유도 요령

마) 화재예방 협조 기관

- (1) 00 소방서(김길동), 010-0000-0000,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점검, 안전교육
- (2) 지방자치단체(정길동), 010-0000-0000, 점검 지원

2) 안전사고 예방 계획 (예)

가) 무대시설 위험요소 파악

(1) 위험 요소

- 와이어로프
- 특수 효과 - 불꽃
- 리깅 스피커

(2) 위험 요소 점검 및 안전사고 방지 계획

- 자체 안전검사
 - 담당자 : 무대기술부 직원 (김길동)
 - 점검시기 : 무대 및 객석 시설 설치 후
 - 점검대상 및 방법 : 공연장 외 공연 자체 안전검사 안내서* 활용
*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발행한 기술도서
 - 점검 후 미비사항 보완 및 안전 위해 요소 제거 실시
- 위험 요소 점검
 - 와이어로프
 - 담당자 : 무대기술부 직원 (김길동)
 - 점검시기 : 리허설 전, 공연 전
 - 점검대상 : 무대 세트 고정용 와이어로프
 - 점검방법 : 육안점검 (와이어로프 체결도구 고정상태, 와이어로프 외관 상태 확인 등)
 - 특수 효과 - 불꽃
 - 담당자 : 특수효과 설치 전문가 (사길동)
 - 점검시기 : 특수 효과 장치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
 - 점검대상 : 특수 효과 장치 및 인접 시설
 - 점검방법 : 육안점검 및 작동 테스트 실시
 - 리깅 스피커
 - 담당자 : 무대기술부 직원 (임길동)
 - 점검시기 : 리깅 스피커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

- 점검대상 : 리깅 스피커 고정부, 체인 연결부
- 점검방법 : 육안점검 (리깅 스피커 고정부 트러스 변형 상태 확인, 체인 육안점검, 고정도구 체결상태 확인 등)

나) 객석 구역 위험요소 파악

(1) 위험 요소

- 고소 시설물
- 견고하지 않은 구조물
- 안전난간이 없는 발코니, 옹벽, 축대 등

(2) 위험 요소 점검 계획

* 모든 위험요소는 명칭 및 수량 등 구체적으로 표기

- 환풍구 3
 - * 공연무대 뒤편 0000도로 건물목 앞 위치
 - 담당자 : 관객관리부 직원 (이00), 안전관리요원 (박00)
 - 점검시기 : 셋업 중, 리허설 전, 공연 전 (공연 중 통제인원 배치)
 - 점검방법 : 육안점검
 - 점검 후 조치 방법 : 접근 통제 구역 설정 및 통제인원 배치
- 채광창 5개
 - * 공연무대 오른쪽 A건물 2층 채광창, B건물 2층 채광창
 - 담당자 : 관객관리부 직원 (이00), 안전관리요원 (최00)
 - 점검시기 : 셋업 중, 리허설 전, 공연 전 (공연 중 통제인원 배치)
 - 점검방법 : 육안점검
 - 점검 후 조치 방법 : 접근 통제 구역 설정 및 통제인원 배치
- C건물 발코니
 - * 공연무대 왼쪽, 안전난간 없음
 - 담당자 : 관객관리부 직원 (이00), 안전관리요원 (하00)
 - 점검시기 : 셋업 중, 리허설 전, 공연 전 (공연 중 순찰)
 - 점검방법 : 육안점검
 - 점검 후 조치 방법 : 발코니 진입문 폐쇄 및 경고문 부착

다) 안전관리 교육

(1) 공연자 안전 교육

- 교육대상 : 공연자

- 교육강사 : 강00
- 교육시간 : 공연 전 1시간 이상
 - * 00월 00일 00시 예정
- 교육내용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3항 관련 공연자 안전교육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 안전 사항 공유

- 교육대상 : 신규 스텝 및 시설 담당 외부 직원
- 교육강사 : 무대기술부장 (김00)
- 교육시간 : 30분 내외
 - * 00월 00일 00시 예정
- 교육내용 : 무대시설, 관객 보호 시설 등 위험요소 및 안전정보 공유

3)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예)

가) 인명피해 방지 협조 기관

- (1) 00 소방서(김길동), 010-0000-0000, 환자이송
- (2) 00 병원(이길동), 010-0000-0000, 응급의료센터
- (3) 00 경찰서(박길동), 010-000-0000, 관객 통제 지원
- (4) 지방자치단체(정길동), 010-0000-0000, 기타 지원

나) 비상 조직의 임무 및 역할

비상 조직	임무 및 역할
총괄	총괄 책임자
관객 대피반	관객 대피 및 출입구 개방, 사고 발생 지역 차단
사고 진압반	초기 대응 및 자체 사고 진압
신고 및 협력반	협조 기관 신고 및 상황 보고, 협조 기관 인계
응급구호반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조치 사항

(1) 사고 진압반

- * 무대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움직이는 무대장치를 정지시킨다.
- * 무대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킨다.

(2) 관객 대피반

- 환자 이송
 - * 객석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킨다.
 -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현장 질서 유지
 - *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현장 질서를 유지시킨다.

(3) 신고 및 협력반

- 협조 기관 신고
 - * 119와 협조기관에 신고하여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한다.
- 구조대원 진입로 안내
 - * 환자의 위치를 구조대원이나 전문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린다.

(4) 응급·구호반

- 환자 이송
 - * 환자 발생 보고를 받으면 즉시 환자가 발생한 곳으로 이동하여, 환자 이송에 협력한다.
- 응급 처치
 -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 *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구호하며, 구조대원이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인계한다.

(5) 의료 지원소 운영 계획

- 운영시간 : 관객 입장 전부터 공연 종료 후 관객 퇴장 완료 시
- 의료 지원소 담당자 : 00보건소 차00 (010-0000-0000)
- 의료 지원소 설치 : 2개 (무대 전면 좌측 1개소, 객석 뒤편 입구 측 1개소)
- 의료 지원 능력
 - 탈진 관객 응급 처치
 - 심정지 환자 응급 처치
 - 탈골, 찰과상 환자 응급 처치
 - 일반적인 부상 치료 등

4.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가) 안전관리비 사용 기간 : 18년 9월 15일 ~ 18년 10월 2일

나) 공연기간 : 18년 10월 1일 18시~20시

다)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 : 3.7%

- 안전관리비용(8,371,546원) ÷ 공연비용(225,000,000원) × 100 = 3.7%

라) 공연비용 : 총 200,000,000원

공연 비용 구분	예산
인건비	25,000,000원
경상사무비	10,000,000원
시설 및 장비 대여비	50,000,000원
시설유지비	10,000,000원
공연제작비	30,000,000원
공연사업비(출연료 등)	100,000,000원
계	225,000,000

마) 안전관리비용 : 총 8,371,546원

항목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1,071,546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4,000,000원
보호장비의 구입비	-
안전교육 및 훈련 비용	300,000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비용	3,000,000원
안전 관련 보험 비용	-
계	8,371,546원

바) 안전관리비용 계상 내역 예시

(1)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1,071,546원

- 안전관리조직 인건비

안전총괄책임자 인건비*

: 102,680원/(일·인) × 10일** × 1인 × 10%* = 102,680원

안전관리담당자 인건비*

: 102,680원/(일·인) × 10일** × 1인 × 20%* = 205,360원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인건비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겸직으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

** 30일 산출 근거 : 공연 기획, 제작, 실시, 철거 단계를 포함한 기간

-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안전요원)

: 9,089원/(시간인) × 6시간 × 14인* = 763,476원

* 14인 산출 근거

- 관객 출입구 : 6인

- 안전구역 통제요원 : 2인

- 무대·관객 구역 통제요원 : 6인

(2)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 3,500,000원

- 무대세트 방염비용 : 500,000원

- 관객통제용품(안전펜스 등) 임대비용 : 3,000,000원

(3) 안전교육 및 훈련 비용 : 300,000원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 100,000원

-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 200,000원

(4)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비용 : 3,000,000원

- 가설 구조물 설계 검토 용역비 : 3,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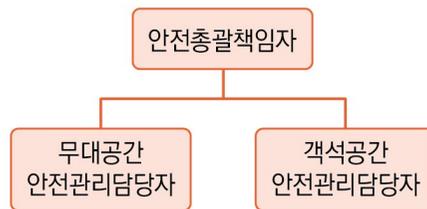
2) 안전관리조직 구성

가) 안전관리조직 지정 이력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이력			
성 명	지정 연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겸직 구분
김○○	00년 00월 00일	부장	겸직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이력			
성 명	지정 연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겸직 구분
이○○	00년 00월 00일	차장	겸직
박○○	00년 00월 00일	과장	겸직
강○○	00년 00월 00일	과장	겸직
최○○	00년 00월 00일	대리	겸직

나) 안전관리조직 구성



- 안전총괄책임자는 1명만 지정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
- 세부 분야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울 경우,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다) 안전관리조직 업무 계획

안전총괄책임자 업무 수행 계획		
담당자	업무 내용	비고
김○○	- 공연 제작, 진행, 철거 작업 안전 총괄 -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 총괄 -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담당자 업무 수행 계획		
담당자	업무 내용	비고
이○○	- 공연 제작 과정에서의 시설 안전 관리 담당 - 가설구조물, 무대시설 자체 안전점검 - 전기 시설 안전 관리	
박○○	- 출연자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전달 - 안전한 공연을 위한 출연자 동선 관리 - 리허설 시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 대책 마련	
강○○	-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관리 - 소화기 등 안전용품 점검 및 관리 - 관객 통제 구역 지정 및 관리 대책 수립	
최○○	- 관객 통제 시설 점검 및 관리 - 객석 구역 내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 - 공연 중 관객 안전 관리	

3) 안전교육 실시 계획

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이력 및 계획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이력				
성명	교육 명	교육 시간	교육 실시 기관	수료일 (또는 예정일)
김○○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집합교육)	2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2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이력 및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이력				
성명	교육 명	교육 시간	교육 실시 기관	수료일 (또는 예정일)
이○○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8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집합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박○○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8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수료)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집합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최○○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집합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온라인교육)	4	공연장안전 지원센터	00년00월00일 (예정)

113

다)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 교육 시기 : 공연 시작 전(해당 인원예 한해)
- 교육 대상 : 공연 스태프 및 안전관리요원(출연진 포함)
- 교육 실시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위탁 수행
 - * 공연장 대관계약 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한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
 -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 요구 및 확인
- 자체 교육 실시
 - * 공연장 위험요인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 * 소방 및 대피시설 안내(소화기 위치, 대피경로 및 피난유도등 관리 안내)
 - * 비상연락망 및 비상 대응 계획 전달
- 교육 결과 관리
 - * 사이버아카데미 교육 수료증 보관(2년)
 - * 자체 교육 실시 이력 관리

라) 자체 교육(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이력 관리

공연자 교육 이력					
No.	성명	소속(공연명)	교육명	교육일자	서명
1	이○○		현장 집체 교육	00-00-00	
2	박○○		현장 집체 교육	00-00-00	
3	강○○		현장 집체 교육	00-00-00	
4	최○○		현장 집체 교육	00-00-00	
5	장○○		현장 집체 교육	00-00-00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1) 안전관리인력 배치 계획



구역	배치인원	구역 책임자	연락처	역할
A	00명	김길동	000-000-0000	출입문 관리 및 관객 통제·안내
B	00명	이길동	000-000-0000	출입문 관리 및 관객 통제·안내
C	00명	박길동	000-000-0000	무대 진입 및 위험 구역 통제
D	00명	강길동	000-000-0000	출연진 보호 및 관객 통제

※ 책임 관리요원 : 홍길동 (연락처 : 000-0000-0000)

2)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

가) 경호 업체

- (1) 업체명 : 0000 (연락처 : 000-0000-0000)
- (2) 인 원 : 00명 (책임 관리요원 : 000-0000-0000)
- (3) 관람객 100명당 1명 기준 배치(안전요원 포함)
- (4) 인력배치 시간
 - 출입문 : 공연 리허설 시작부터 배치
 - 객석 구역 : 공연 시작 4시간 전부터 배치
 - 위험 구역 : 공연 리허설 시작부터 배치
 - 인력철수 시간 : 모든 관객 퇴장 시

나) 협조 기관 요청 (경찰병력 지원)

- (1) 협조 기관명 : 00 경찰서 (연락처 : 000-0000-0000)
- (2) 경찰 병력 : 00명 (책임자 : 000-0000-0000)
- (3) 경찰 병력 배치 시간 :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관객 퇴장 시 까지

다) 자원봉사 단체

- (1) 단체명 : 0000 (연락처 : 000-0000-0000)
- (2) 인 원 : 00명 (책임자 : 000-0000-0000)
- (3) 자원봉사 시간 :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관객 퇴장 시 까지

3) 관객 입·퇴장 계획

가) 관객입장 계획 (예)

출입문 요원 배치	안전라인 설치	입구 개방	주차장 통제
공연당일 00시	공연전날 00시	공연당일 00시	공연당일 00시

나) 관객퇴장 계획 (예)

출구 개방	퇴장 방법	안전라인 정리	주차장 관리
공연 중 항시	안전요원 유도	공연종료 후	공연 및 관객 차량 퇴장 시까지

4) 안전관리요원 교육

가) 교육실시 : 영상자료 활용 및 집합 교육

나) 교육자료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영상자료(관객안전요원 안전교육)

다) 영상자료 교육 내용

- (1) 관객안전요원의 정의 및 특징
- (2) 관객안전 위험도에 따른 주의사항
- (3) 비상 시 행동요령 및 응급사고 조치

라) 집합 교육 내용

- (1) 구역별 관객 안전 관리 요령(객석, 출입문 등)
- (2) 비상연락망 및 비상 보고 절차

6. 공연계획서

※ 2016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내용 인용
(아래 내용의 일부는 2016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연명 : 0000 공연

2) 공연 일정

- 2016년 8월 12일(금요일) 00:00 ~ 00:00
- 2016년 8월 13일(토요일) 00:00 ~ 00:00
- 2016년 8월 13일(일요일) 00:00 ~ 00:00

3) 공연 장소

00시 00구 00공원 (인천 연수구 ○○로 000)

4) 공연 주최

인천광역시 (주소 :)

담당자 : 강00 (032-000-0000)

5) 공연 주관

00 Ent (주소 :)

총괄 책임자 : (정) 홍길동 (055-000-0000, 010-0000-0000)

(부) 이몽룡 (055-000-0000, 010-0000-0000)

6) 관람 예상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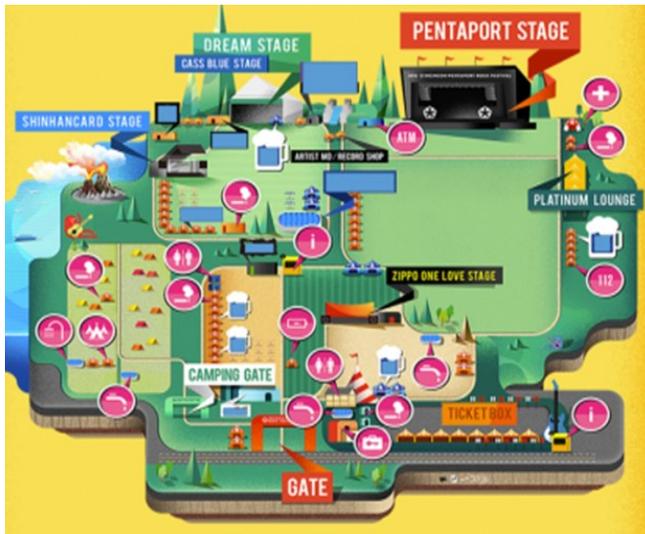
1회당 약 10,000명 (객석 공간의 최대 수용 인원 : 10,000명)

7) 공연 보험 가입 계획

- 공연 보험 계약 사본 제출 예정
- 보험사명 : 000 (연락처 : 000-0000-0000)
- 계약 내용 : 관객 00명 대상, 공연 시설 대상, 00손해보험
- 보험료 : 0000원

8) 공연시설 배치도

[그림 3-11] 공연시설 배치도 (201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기호	내용	기호	내용
	종합안내소		사위실
	화장실		의료지원소
	물품보관소		경찰
	세면대		흡연구역

재해대처계획 작성안내서 (공연장 및 공연) 2018년 증보판

발 행 2018년 12월 19일
저 자 김동균, 강민석, 이주연, 한진실, 심수, 윤성흠
기획·개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주소 : (우)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전화 : 02-860-1177
홈페이지 : www.stagesafety.or.kr

인 쇄 (주)옵스웨이
전화 : 02-2624-0800

I S B N 979-11-88477-10-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8

- 본 안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공연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 본 안내서의 내용은 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나 시설에서의 공연에서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서 법적 의무나 강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